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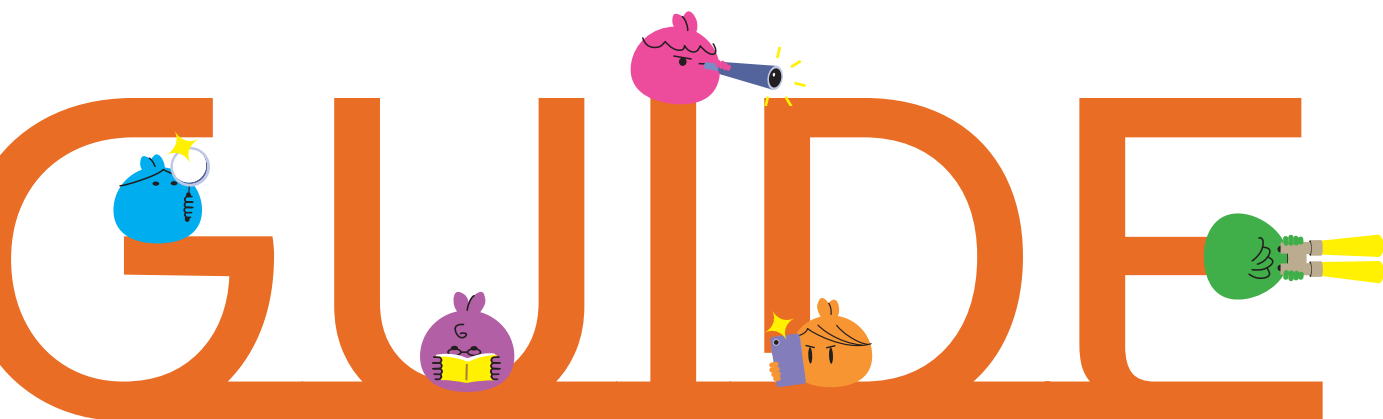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24-027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현장활용 가이드북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현장활용 가이드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현장활용 가이드북¹⁾

목차

1 인신매매방지법 이해하기



- 1-1. 도입 배경 및 취지
- 1-2. 인신매매등 주요 개념

2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와 법정의무교육

- 2-1.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 2-2. 인신매매등 법정의무교육

1) 해당 자료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현장담당자 교육자료(해설서)(여성가족부, 2023)를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3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이해하기

- 3-1.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준비
- 3-2.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기준
- 3-3.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내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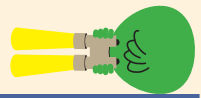
피해자 지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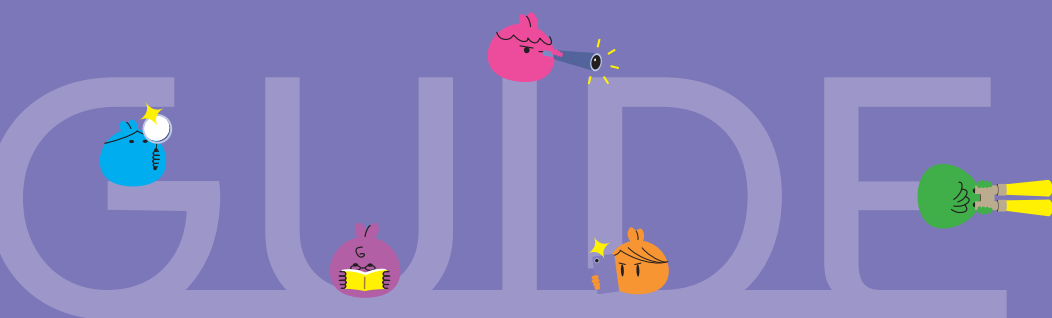
- 4-1. 피해자 유형 및 사례별 참고사항
- 4-2. 피해자 식별과 확인서 발급
- 4-3.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5

부록



- 5-1. 언어별 피해자 식별지표
- 5-2. 인신매매등 식별의 Quick Guide
- 5-3. 피해자 지원기관 목록
- 5-4. 사증 관련 정보



인신매매방지법 이해하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도입 배경 및 취지

1-2. 인신매매등 주요 개념



01

인신매매방지법 이해하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도입 배경 및 취지

☑ 대한민국 「형법」에는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가 있었으나, 법의 구성요건을 '부녀를 매매한 자'로 명시하여 한계가 발생 하곤 하였습니다.

☑ 이를 바로잡고자 2013년 「형법」 제289조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에는 인신매매를 착취 목적으로 설명하는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팔레르모 의정서)에 비준하였습니다.

☑ 한국은 효과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발견·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국제사회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를 폭넓게 정의하는 팔레르모 의정서 등에 따라 2021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습 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행위와 수단을 구성요건으로 사람 매매가 아닌 착취 목적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 신설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시행



알아두기①

인신매매 범죄는 국경을 넘는 조직범죄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공동의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된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범행 장소나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의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방지법 비교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기준* 행위, 수단, 착취 목적

구분	조문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란?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팔레르모 의정서 제3조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를 이용한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인신매매 방지법 제2조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인신매매등' 정의와 구성 요소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업무관계, 강제적인 수단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인계·인수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인신매매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착취 목적, 수단, 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착취목적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수단	사람에게 가.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 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박한 상태를 이용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강제적인 수단
행위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인수하는 일련의 행위

“인신매매등피해자” 정의와 요건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는다.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 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된 장애인을 뜻합니다.

👉 33페이지 참고

- ➡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는 👉 42페이지 참고

- ➡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를 뜻합니다.

인신매매등범죄(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2호)	
형법에 따른 인신매매등 범죄	• 제274조(아동학사)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인신매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제294조(미수범) • 제296조(예비, 음모)
기타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 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알아두기②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한국 국적의 피해자이거나,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이어야 합니다.



알아두기③

인신매매등피해자가 착취 상황에 동의했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위법적인 인신매매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동의는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등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고정관념 알아보기!

Q 인신매매등피해자는 모두 납치를 당하나요?

A 인신매매등피해자 일부는 강제로 끌려가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거짓 약속에 속아 자발적으로 인신매매등 행위자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Q 인신매매등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신매매등 행위자는 피해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인신매매 범죄가 처벌되지 않거나, 오히려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지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와 법정의무교육

- 2-1.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 2-2. 인신매매등 법정의무교육
-



02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와
법정의무교육

2-1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 ✓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수사기관(112) 신고 혹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상담전화(1600-8248)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신매매방지법 제50조)



<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 시설 >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시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복지시설·
수용시설·보호시설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국인고용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알아두기④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등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 교육 내용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범죄의 주요 내용,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신고방법,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등

☑ 교육 방법

매년 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 대상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교육자료 게시처 (2025년 기준, 인신매매등으로 검색)

게시처	사이트 주소
여성가족부 나라배움터	https://mogef.nhi.go.kr
온국민 평생 배움터	https://www.all.go.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https://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4050	https://sll.seoul.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수료증 미발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한국여성인권진흥원 WHRIK * 수료증 미발급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포털	https://edu.stop.or.kr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한정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이해하기

- 3-1.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준비
 - 3-2.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기준
 - 3-3.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내용
-



03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이해하기

3-1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준비

✔ 피해자 식별지표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여 고시한 것입니다.

✔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권고 기관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⑤

인신매매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⑥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식별지표 외국어 번역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준비하기



- ☑ 긴급하게 즉시 개입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고지 후 경찰 신고 및 현장 출동 요청을 해야합니다.
- ☑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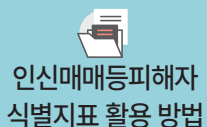
- ☑ 인신매매 등 행위자의 통제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한정된 정보만을 알게 되고, 지원기관이나 지원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신매매 등 과정에서 감시나 통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계적인 상황 등 피해자의 사회적 조건 및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 ☑ 피해자의 비밀보장은 중요한 원칙이며, 상담 과정 중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 상담 내용과 정보 수집 이유, 목적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지원 내용 및 연계 상황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내담자(피해자 혹은 신고의무자 등)와 대화 시에는 상담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격려하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피해자 식별은 피해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담 및 수사 등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분리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피해자 식별지표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당 항목에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 피해자의 전반적인 상황 및 이야기를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지표에 적용하여 피해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 약속해요. 하나

일부 인신매매등피해자는 한정된 정보와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 식별 절차를 피하거나 기타 이유로 식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식별 과정에서 상담·지원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해자가 원활하게 식별 및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약속해요. 둘

국적, 문화적 배경, 성인지·장애 감수성 등 피해 대상의 특성에 따라 상담방식과 고려 사항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2페이지의 <4. 피해자 지원 과정>을 참고해주세요.

😊 약속해요. 셋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한 면담에서는 피해자가 불법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법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면담해야 합니다.

인신매매등 행위자는 많은 경우 피해자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인신매매등 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신매매 방지법 제4조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피해 사실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약속해요. 넷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는 피해자 조기 식별을 위한 기초적인 확인사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23-13호)에 따르면 식별지표 활용 권고 관계 기관의 장은 “국적, 성별, 연령,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지표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즉 식별지표를 활용하되,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황에 적절한 심도 깊은 상담과 수사를 통해 식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2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기준

☑ 피해자 식별지표 구성

행위	수단	착취 목적
모집	위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공통
운송	위계 (사기·기만 등 유인포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은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노동력 착취
인계·인수		장기적출 등 착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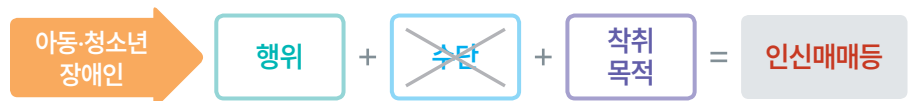
행위, 수단, 착취 목적에서 각각 1개 이상의 항목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신매매방지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적용 기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은 '행위'와 '착취 목적' 두 요소에서 각각 1개 이상의 항목 조건만 충족되어도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아동·청소년은 수단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행위와 착취 목적 조건이 충족한다면 인신매매등에 포함됩니다.



알아두기⑧

여성이족부가 개발하여 고시한 피해자 식별지표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피해자 식별지표도 있습니다.

3-3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내용

행위

요소	항목
모집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운송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였다.
은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인계인수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1 모집

- 정의 사람을 어떤 절차로 이끄는 행위를 총칭
- 특징 1. 인쇄매체, 인터넷, TV, SNS 등 다양한 통로
 2. 불법인력 모집업체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집업체도 해당
 3. 가족, 지인 등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모집행위 발생 가능

사 례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 사후관리비 및 임금체불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하면 송출비용을 갚을 수 있다는 광고에 대다수 이주노동자는 은행 또는 송출업체의 자회사에서 대출받거나 친척·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송출업체에 고액의 송출비용을 납부하여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후 이주노동자를 관리하는 일종의 송입업체에 ‘사후관리비’까지 지불해야 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전액지급 받지 못하였다.”

→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은 과도한 송출입 수수료를 내고 모집되었으며 고용 이후 에도 사후관리비를 지불하며 착취를 당했습니다. 규정상 송입업체는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업체 사후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갈취를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대행하는 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월 1회 정기적인 임금을 전액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나 송출입업체에 종속되어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고용법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 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선원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운송

- 정의 1.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면서 통제를 받는 행위
 - 2. 사람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행위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을 예약하거나 이동 차량을 운전 할 운전사를 섭외하는 등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특징 1. 모집자와 운송자가 동일한 경우
보통 모집을 한 모집자가 운송에 관여하여, 피해자를 인수 받아 운송한 뒤 다른 인신매매등 행위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다수임
» 운송자의 운송 행위는 대개 '인계와 인수' 사이를 오감
 - 2. 모집자와 운송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① (잠재적)피해자가 착취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운송자가 피해자를 이동시킬 때 인신 매매등 행위인 '운송'이 성립될 수 있음
- ② 피해자들은 승용차, 버스, 기차, 배, 비행기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통해 운송될 수 있으며 운송인(운송회사)은 피해자가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음
- ※ 인수 중에는 없었던 '착취 목적'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운송 중에 생길 수 있음

사례

노동력 착취 장애인 피해자가 착취 당할 것을 알면서 운송

노동력 착취를 당하던 지적장애인이 피해장소를 탈출하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택시 운전사는 피해자가 노동력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고용주에게 데려다주었다.

3 은닉

- 정의 1. 피해자를 숨기거나 수용, 숙박, 운송 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은폐하는 행위
- 2. 은닉은 피해자를 범죄자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포함
- 특징 1. 숙박시설에서의 은닉
인신매매등 행위자는 피해자를 호텔, 모텔, 아파트, 주택 등 숙박시설에 은닉할 수 있으며, 이때 은닉 장소의 환경이 열악하지 않을 수 있음



2.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통제하는 은닉

여권 및 신분증과 휴대폰 갈취, 신상 유포 등의 협박과 같은 정서적 압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

사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은닉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업주 B씨는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 여성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도망가거나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갈취 등을 일삼았고, 또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 위 사례의 경우 이주 여성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 및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은닉을 행한 사례입니다.

4 인계·인수

- 정의 1. 인수: 피해자 등을 '받거나 획득'하는 행위
2. 인계: 소유하거나 통제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넘기는 것
- 특징 1. 피해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계하는 사람에게는 착취 목적이 있으나 인수하는 운송자는 피해자가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음
2. 인계와 인수는 단독으로 행해지기보다, 다양한 행위와 연계된 경우들이 대다수일 수 있음
착취의 목적을 가진 모집자나 운송인이 피해자를 착취 전에 은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인계로 인신매매등 행위를 한 것임

사례

인수·인계가 동시 발생한 사례

1. 공연기획사 대표 A는 현지 파트너 기관이 모집하여 보낸 이주 여성을 공항에서 인수하여 차에 태워 최종 목적지인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인계하였다.
2. 중개업자인 B는 점심식사 무료제공이 이루어지는 공원에서 지적장애인을 모집한 후 자신의 차에 태워 불법인력 모집업체에 인계하였다.

→ 인계와 인수는 단독으로 행해지기보다, 앞서 설명한 행위와 연계된 경우들이 대다수 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인수자나 인계자가 피해자가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 사람을 인수·인계하였다면 인신매매등 행위 성립 가능합니다.

» 행위의 조건 중 모집, 운송, 은닉, 혹은 인수·인계에 해당하나요?

수단

요소	항목
위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계 사기·기만 등 유인포함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예시

요소	항목
 경제적 통제수단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하여 급여·퇴직급여를 자신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또는 이탈 보증금에 의한 속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겪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채무 변제를 이유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채무의 예시) 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사업장 내 벌금, 생활비 명목 선급금 등
	노동의 대가로 급여·퇴직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물리적 통제수단	고용주, 기획사관계인, 중개인,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하였거나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업소(성매매/유흥업소/마사지 업소/클럽 등)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했다. 숙소에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감시를 당했다.



 물리적 통제수단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된 상태로 감금당했다.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 못하거나 신분증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서적 통제수단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국내에서 내쫓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1 위력

- **정의** 1.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무형적 힘
2.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정치·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
- **형태** 1. **강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2. **체포**: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3.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4. **약취**: 폭행·폭력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

사례

협박과 물리적 통제

예술흥행(E-6-2)비자를 받아 '가수'로 계약을 맺고 노래 심사 등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 여성은 '가수'가 아닌 일명 '주시걸'이라 불리며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손님에게 '주스'(술이나 음료수)를 많이 팔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불법 체류자로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업주는 여성들의 여권까지 압수 하였고, 외국인으로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취약한 지위로 인해 결국 이주여성들은 성매매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 위력(협박) 및 물리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시인 여권 압수 등에 해당됩니다.

2 위계

- **정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不知)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 **형태**
 1. 사기: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2. 기만: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
 3. 기망: 사실을 은폐하는 등 상대방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4.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자유로운 생활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관계로 옮기는 행위

사례

위계·유인에 해당하는 사례

A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세)에게 연락하여 “고가의 핸드폰과 현금을 준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 SNS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후 추행한 사례로, 강압적 수단이 아닌 ‘유인’의 정도에 해당하는 기망·유혹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도 인신매매등 성립조건인 수단을 충족합니다.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 형태 1. 권력남용

권력을 가진 개인, 그룹, 혹은 기관이 그 권력을 부당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즉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위력의 행사를 뜻함

2. 취약한 지위의 남용

단순한 부당 처우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과 만나게 되면 착취가 될 수 있음

*예시: 장애 여부, 제한된 교육, 성별, 빈곤, 불안한 체류자격 등



알아두기⑨

인신매매방지법상 '취약한 지위'라는 말은 '궁박한 상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여 취약한 지위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3. 지배관리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보수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것

사례

협박과 물리적 통제

사례1. 취약성을 이용한 노동력 착취

체류 자격이 없는 D씨가 식당 주인 G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하자 G씨는 D씨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내가 시키는 조건으로 일을 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속이 나오더라도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고 장기간 근로시켰다.

→ 취약한 지위(미등록 외국인 신분)를 수단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사례입니다.

사례2.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수단을 활용한 사례

① 이주노동자는 잠금장치가 없는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가건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인 농장주인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다.

→ 이처럼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숙소뿐 아니라 사업주의 통제 하에 있는 숙소도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

② 여권을 가져간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자, 고용주는 출입국 당국에 이탈 신고를 해서 본국으로 쫓아버리겠다고 하였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 증명 서류 압수가 부당한 처우와 결합될 시, 인신매매등 착취 목적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수단의 조건 중 위력, 위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에 해당하나요?

✓ 착취 목적

요소	항목
공통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 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 받았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노동력 착취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장기적출 등 착취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된다.

1 공통

피해자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제약

2 성매매와 성적 착취

성적 착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착취 목적 인정



3 노동력 착취

-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적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매상 할당량, 벌금제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해당
-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하거나 고용계약서상 사업장보다 노동 조건이 열악한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육체 및 언어폭력을 가하는 일들도 해당

4 장기적출 등 착취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

사 례

고용주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밭에서 일을 시켰고, 업무를 마치자마자 지인의 밭으로 보내 더 고강도의 노동을 시켰다. 이를 거부하자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였으며, 이주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 일하는 과정에서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육체적·언어적 폭력을 일삼는 행동은 정서적 압박과 위축감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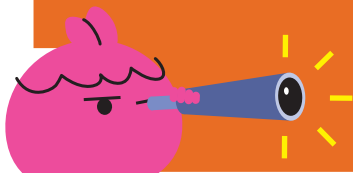
» 인신매매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착취가 '실현'될 필요는 없고, 행위자에게 착취의 목적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등 행위자가 실제로 착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등의 행위(모집, 운송 등)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착취의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과정

part

4



- 4-1. 피해자 유형 및 사례별 참고사항
 - 4-2. 피해자 식별과 확인서 발급
 - 4-3.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04

피해자 지원 과정



4-1

피해자
유형 및 사례별
참고사항

☑ 장애인 피해자

1. 장애 유형(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유형	내용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장애유형	내용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아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피해자 고려사항

- ①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될 경우,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개인·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상담·조사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②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어를 사용하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수어통역사를 연계하거나 필담, 의사소통 보조기구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필요한 편의시설과 상담 장소 등의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하여 이동 경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 등과 같은 보장구 필요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어, 인신매매등 행위자를 피해자의 보호자로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정확한 장애유형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국인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등에 기재된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여 발달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련하여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관련 지원제도

◎ 사법절차 지원제도

- **국선변호사**: 심신의 장애가 있으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검사 제도**: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13조)
- **진술조력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16)

진술조력인 제도란?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지원대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지원

※인신매매방지법도 진술조력인 지원 조항을 명시(제18조)

◎ 피해자 지원기관

-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및 예방
※ 장애인 학대 상담 전화(1644-8295)
 - ② 학대장애인 쉼터
 - ③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
-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류는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현황 홈페이지 참고

☑ 성매매와 성적 착취 피해자

1. 피해자 고려사항

-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에 유입된 경우, 피해자가 한정된 정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소개업자, 사채업자 등에 의한 인신매매등 피해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 ② 경찰 단속이나 긴급구조 사례가 아닌 경우,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해당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정보나 사실에 대해 함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담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록한 후, 추후에 적절한 상황과 시기를 고려하여 상담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할 수 있으므로 단속, 특히 긴급구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시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성매매, 성적 착취 피해자가 성매매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인적사항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처벌법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자로 인지할 경우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 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피해내용에 따라 꼭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인신매매등 착취의 한 형태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하였더라도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2. 관련 지원제도

◎ 체류자격 지원제도

-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성매매처벌법 제11조)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처벌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Q. 성매매 피해자가 외국인보호소에 입소되었거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 피해자임에도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경우 성매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소장, 진술조서 등)를 근거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일시 보호 해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 ① 일반·청소년·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 등 지원
- ② 자활지원센터
 - 취업 및 기술교육 진행, 정보 제공
- ③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상담 및 현장 방문, 피해자 구조, 성매매 예방 홍보·교육 진행
 -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지원
 - 외국인지원시설은 귀국지원도 가능

✓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에 대한 식별절차는 관련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고 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련의 보호 조치와 구체적인 접근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동이 인신매매등피해자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아동 관련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원항목



※ 여성가족부 운영 여성·가족·청소년·권익시설 정보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유형별 서비스 ⇒ 시설찾기 참고

☑ 이주민 피해자

1. 피해자 고려사항

- ① 이주민 피해자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고립되고 위험한 피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식별지표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② 이주민 피해자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입국 시 지불한 송출 수수료 또는 채무, 체불된 임금 등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로 인터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③ 국적에 따라 고유한 문화, 행정 체계 등이 각각 다르므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 ④ 미등록 체류자격 이주민은 강제출국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수의 사례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경우,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만들겠다고 하면 겁을 먹고 사업장에 복귀하거나 진정 사건을 취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상담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기반으로, 피해자가 인신매매 등 행위자의 협박에 회유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관련 지원제도

◎ 체류자격

• 통보의무의 면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시행규칙 제70조의2)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나 인권침해 구제 등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 중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통보의무 조항(「출입국관리법」제84조)을 면제받습니다.



Q. 피해를 입은 이주민의 체류기간이 초과한 경우, 즉 미등록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체류자격은 한국 출입국으로부터 받은 자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라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초과되었고, 만약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할 예정이라면 사증 중 G-1(기타) 사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G-1 사증으로 고소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더라도 위 절차 종료 후에 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부가 법률적으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류자격 없는 상태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G-1 사증에는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의 사증과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사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고소장 접수증, 소장 사본, 소장 접수 증명원, 법률구조 결정서 등이나,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사무소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 G-1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증 발급 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에서 체류한 동안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체류 기간 초과, 사업장 이탈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그 재량에 따라서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청을 통한 진정·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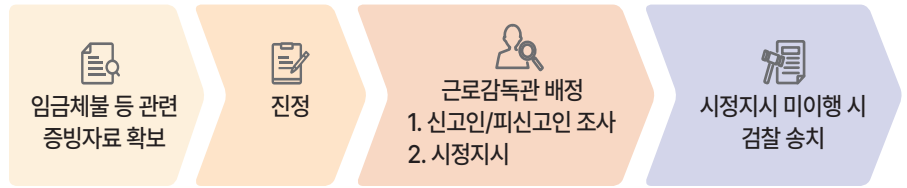
① 임금체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뜻합니다.

② 진정/고소 신청방법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에게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 가능, 만 24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지원)

③ 노동청 진정 절차



※ 고소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신고'를 뜻하며, 근로감독관은 조사와 시정 지시가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피해자 지원기관

- ①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 폭력피해상담, 고용 및 체류상담, 무료법률 및 의료지원
- ③ 고용노동부 위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93페이지 참고](#)



알아두기⑩

☑ 피해자의 유형 및 특성이 중복되는 경우

피해자의 특성이 중복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시설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 착취를 경험한 지적장애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 기관과 장애인 지원기관이 함께 논의한 후 연계·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를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착취를 목적으로 행위와 수단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착취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거나 진술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의뢰인에게 진술의 법적의미, 정확한 진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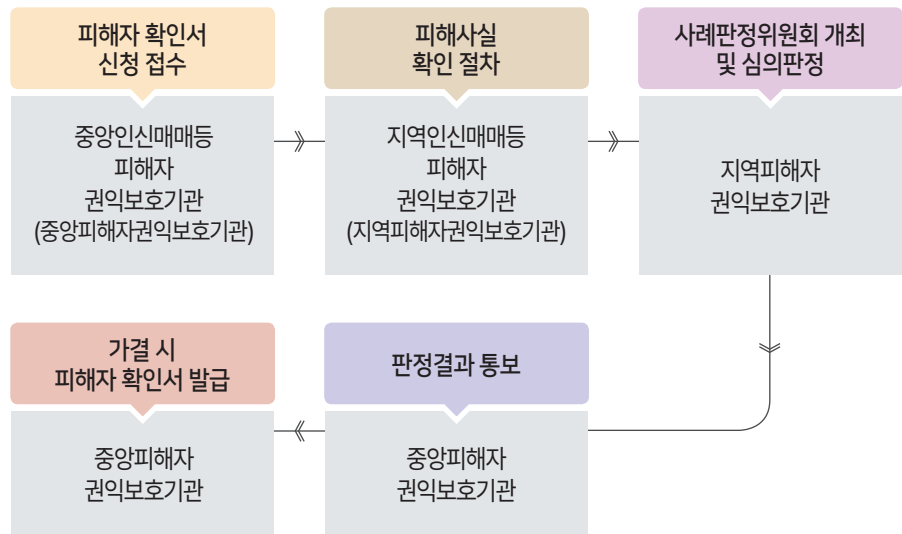
피해자 식별과
확인서 발급

☑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신청 대상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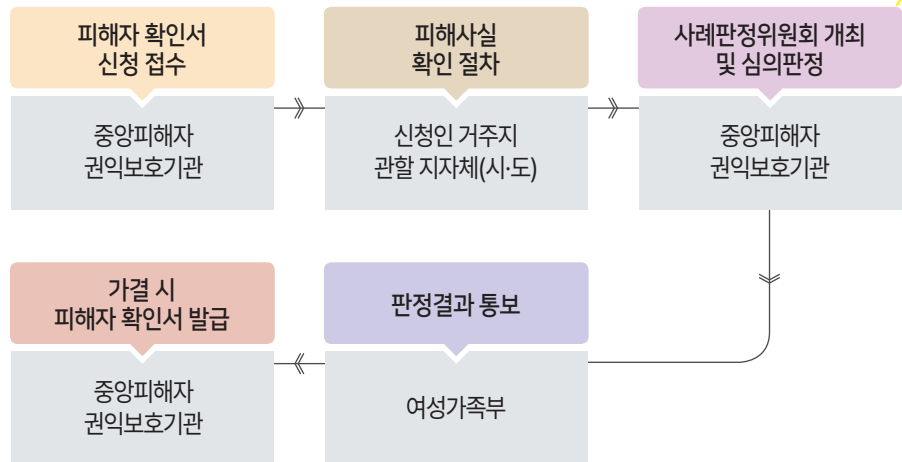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



- 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 ②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현장조사 진행
- ③ 현장조사 결과 및 신청서를 기반으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 ④ 피해자 확인서 심의·판정 결과를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통보
- ⑤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피해자 확인서 발급

◎ 한시적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

-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도)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판정결과는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4-3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인신매매방지법 제1장 총칙 ·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 6조 (피해자의 권리)	인신매매등피해자의 권리 •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 보장받으며 법률 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15조 제1항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 기관의 설치)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역할 •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 정책 개발 및 보급 •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협력체계 및 교류 • 신고접수 등
제15조 제2항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 기관의 설치)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역할 • 피해자 권익을 위해 인신매매등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 •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 <u>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한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운영</u>

※ 현재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부재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한시적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 특례**

인신매매방지법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16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	범죄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가능 ※ 인신매매등범죄 수사 및 재판 절차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7조 6항을 준용하여 피해자국선번호인을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제17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
제18조 (진술조력인 지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인신매매등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1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필요 •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함
제20조 (심리의 비공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인신매매방지법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보호·지원

제22조 (응급조치의무 등)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필요시 의료기관 인도가 이루어져야 함
제23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4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함. 채권양도 및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
제25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음
제2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할 수 있음
제27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음
제28조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29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30조 (생계지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제31조 (귀국지원)	외국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는 구조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7페이지 참고](#)

인신매매등피해자 체류자격 관련 지원

인신매매방지법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2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인신매매방지법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43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 (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 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

◎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 대상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에 명시된 인신매매등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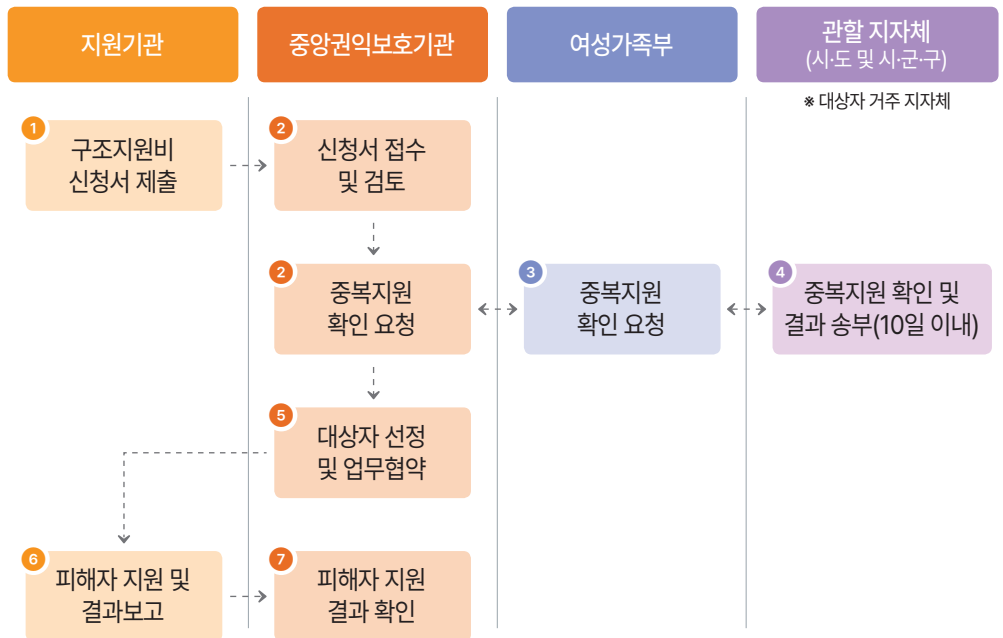
◎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 원칙

타 지원제도를 통해 취학·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인신매매방지법 제32조). 단 '질병군'이 다른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하며, 법률지원은 심급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1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경우,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로 '직업훈련'을 제외한 타 항목 지원 가능

예시 2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의료비(심리상담) 지원을 받는 경우,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의료비(산부인과)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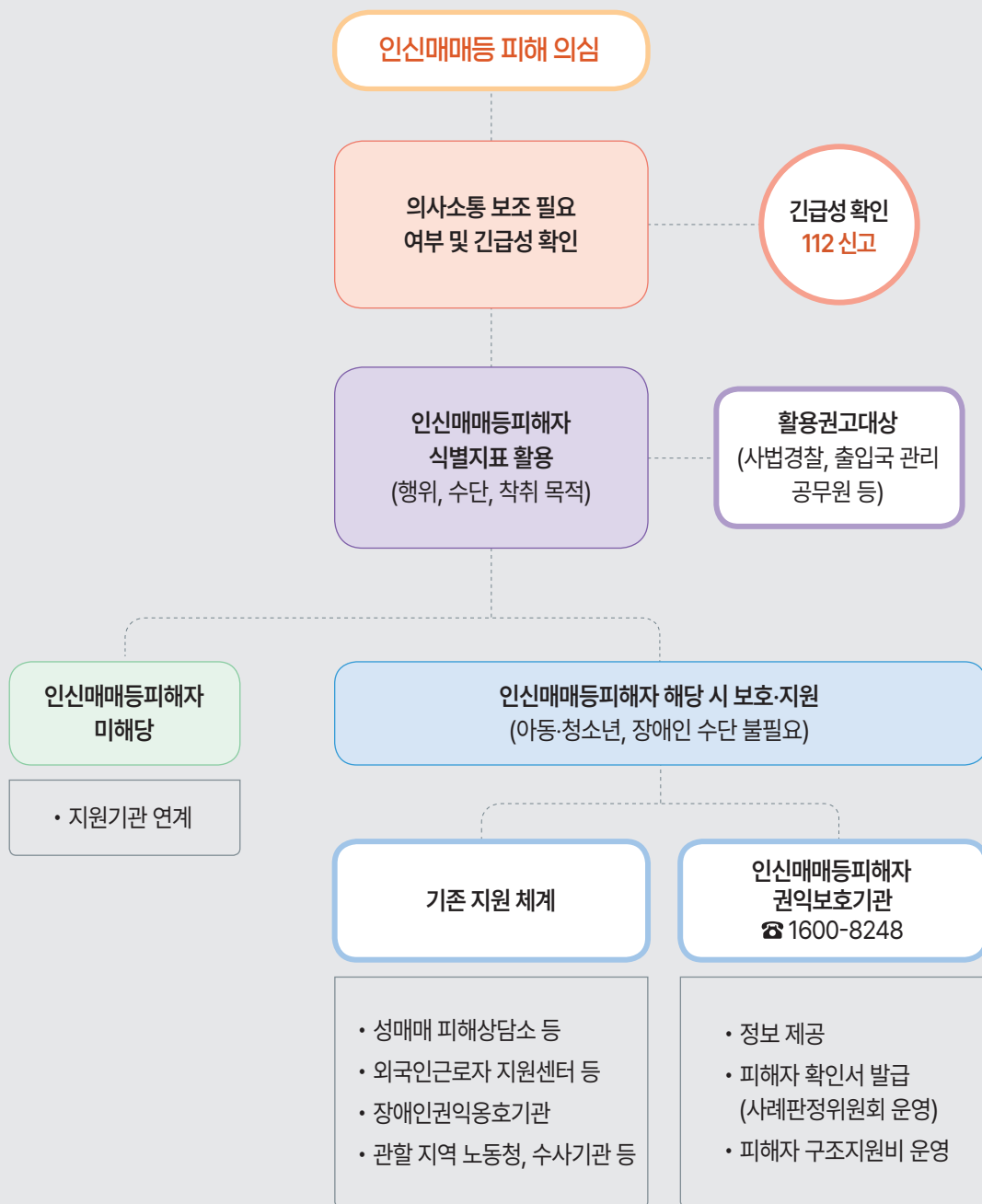
◎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 체계도



◎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 항목

구분	근거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방법
취업 지원	제26조	1인당 총 150만원 한도	출석률 80%	수강료, 재료비 등
법률 지원	제27조	1인당 총 600만원 한도	필요시	실비
의료 지원	제28조	- 1인당 총 500만원 한도 - 추가지원 필요시 중앙권익 보호기관 사례회의 실시	필요시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생계 지원	제30조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기준 *1인당 3회 지원 (최대 6회) 원칙	소득조사 진행 후 지원 (직계비속 미성년자 포함)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귀국 지원	제31조	실비	필요시 (직계비속 미성년자 포함)	실비
통역 지원	-	1인당 총 150만원 한도	의료·법률 지원 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료, 번역료 기준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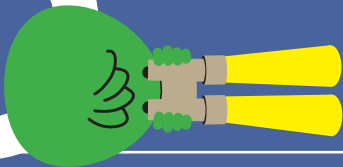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원 체계 흐름도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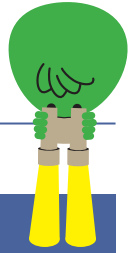
part

5



- 5-1. 언어별 피해자 식별지표
 - 5-2. 인신매매등 식별의 Quick Guide
 - 5-3. 피해자 지원기관 목록
 - 5-4. 사증 관련 정보
-

05 1. 언어별 피해자 식별지표



한국어

피해자식별지표의 세부 점검항목

가. 인신매매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모집
☐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였다.	운송
☐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은닉
☐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인계 인수

나.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계 (사가·기만 등 유인 포함)
☐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위 '수단' 요소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통제수단

-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하여 급여·퇴직급여를 자신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또는 이탈보증금에 의한 속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겪었다.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 채무 변제를 이유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 (채무의 예시) 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사업장 내 벌금, 생활비 명목 선금금 등
- 노동의 대가로 급여·퇴직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물리적 통제수단

- 고용주, 기획사 관계인, 중개인,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하였거나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했다.
- 숙소에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감시를 당했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상태로 감금당했다.
-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 못하거나 신분증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서적 통제수단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국내에서 내쫓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다.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공통
☐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았다.	
☐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노동력 착취
☐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된다.	장기적출 등 착취

영어

Detailed Inspection Items of Victim Identification Indicators

A. Items corresponding to 'actions' of human trafficking are as follows.

Category	Requisite
☐ They promised to meet with the recruiter and pay a fee (intermediary fee, departure deposit, etc.) through personal and family contact networks or after seeing job advertisements (print media, radio, television,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 etc.).	Recruitment
☐ They moved to a new address, a different country, away from where they lived, and accompanied the person who recruited or moved them without prior consent to the destination.	Transport
☐ Before reaching the final destination, they had to stay in a restricted pl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Concealment
☐ They were handed over to a third party by the person who recruited or moved them.	Takeover

B. Items corresponding to 'means' of human trafficking are as follows.

Category	Requisite
☐ They moved against their will due to assault and intimidation against them or their families, or their free movement was restricted or isolated.	Force (including assault, intimidation, coercion, arrest, confinement, and drugging)
☐ The explanations (notifications) of what to do at the time of recruitment were different from what they actually did or the working conditions, but they had no choice but to comply with the working conditions suggested by the employer.	Hierarchy (including inducements such as fraud and deception)
☐ Due to the control, they could not move or leave freely, such as debt owed to the recruiter or inability to own documents such as salary bankbooks or identification cards against their will.	Other equivalent means (including abuse of power, exploitation of vulnerability, control management, etc.)

Examples of 'other equivalent means' among the above 'means' are as follows.



Economic control

- Excessive deductions or reductions in wages and severance pay were made without the worker's consent by exploiting unfair rules at the workplace.
- They were subjected to constraints stemming from debt or security deposits incurred during the employment or migration process (recruitment, transportation, post-arrival, etc.), resulting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Difficulty in quitting or changing workplaces according to their will. Unfair deductions or reductions in wages and severance pay to repay debts.
(Examples of debts): Costs for document preparation, visa issuance, travel expenses, lodging, brokerage fees, workplace-imposed fines, and advances for living expenses.
- They received little to no wages or severance pay for their labor or were unable to manage them independently.



Physical control

- They were subjected to sexual or physical violence, or repeated verbal abuse by employers, agency officials, brokers, workplace officials, etc.
- They were forced to do work that did not meet or agre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they had to work even after the end of working hours.
- Regardless of their will, they were moved to another business establishment (prostitution, entertainment establishment, massage parlor, club, etc.) or worked in various areas.
- They were monitored, employers and other people coming in and out of the accommodation freely.
- Food, water, and daily necessities were restricted, and medical services were limited.
- Due to security devices such as barred windows, locked doors, and electronic surveillance, they were imprisoned with restricted free movement.
- Permission was required to go out, and, against their will, they had to be accompanied by another person. In addition, permission was required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exchanging letters, telephones, mobile phones, etc.).
- They could not have an identification card such as passport or ID card, or their request for returning of their identification card was rejected.



Emotional control

- They were unable to quit their job due to threats of harm to them, their family, or their acquaintances.

- A sense of fear that they would be expelled from the country or sent to a worse place was created.
- A sense of fear was created, suggesting that, if they reported to the police, they would be punished as if they committed an illegal act (prostitution, illegal stay, criminal acts, etc.).
- Distrust of the police were established, such as by telling the victims that there are connections within the investigative agencies or the courts and that it was useless to report to the police.
- They were threatened that, if they escaped from the establishment (prostitution, entertainment establishment, massage parlor, club, etc.), their family and acquaintances would be informed of their involvement in prostitution or that photos and videos that made them feel sexually humiliated would be taken and shared.
- Fear was instilled by keeping them unaware of their current address and location and by preventing them from communicating.

C. Items corresponding to 'purpose' of exploitation such as human trafficking are as follows.

Category	Requisite
☐ They were subjected to deductions or restrictions on managing their wages and severance pay under the pretext of repaying debts or security deposits incurred during the employment or migration process (recruitment, transportation, post-arrival, etc.), including costs such as document preparation, visa issuance, transportation costs, lodging, brokerage fees, and security deposits.	Common
☐ They were unable to quit their jobs at their free will or were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	
☐ They were forced to engage in prostitution or were sexually exploited.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 Legitimate working conditions (minimum wage, allowances, working and rest hours, provision of room and board, etc.) were not consistently guaranteed.	Labor Exploitation
☐ They were forced to do work not included in the contract, and if they did not work, they were subjected to physical or repeated verbal abuse.	
☐ Illegal organ transplants are suspected due to the person claiming organ extraction or showing traces or wounds on the body.	Exploitation such as organ harvesting

일본어

被害者識別ガイドラインの詳細点検項目

ア) 人身売買等の「行為」に該当する項目は次のとおりである。

項 目	要 素
☐ 本人および家族の連絡網を通じて、または就職広告(印刷媒体、ラジオ、テレビ、インターネット、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 (SNS) など)を見て求人者に会い手数料(仲介料、離脱保証金など)を与えることを約束した。	求 人
☐ 元の居住地から離れて新しい住所地や他国に移動し、事前の同意なしに求人した者または移動させた者と目的地まで同行した。	運 送
☐ 最終目的地に到着する前に、出入りが制限された場所で、一定期間滞在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隠 匿
☐ 求人をした者または移動させた者により第三者に引き継がれた。	引継ぎ 引受け

イ) 人身売買等の「手段」に該当する項目は次のとおりである。

項 目	要 素
☐ 本人または家族に対する暴行と脅迫で本人の意思に反して移動したり、自由な移動が制限されたり孤立させられたりした。	威力 (暴行、脅迫、強要、逮捕・監禁、略取を含む)
☐ 求人当時、どのような仕事をするかについて説明(告知)を聞いた(受けた)ことと、実際にしたことや労働条件が違ったが、使用者が提示した労働条件に従うほかなかった。	偽 計 (詐欺・欺瞞などの誘引を含む)
☐ 本人または家族が求人者に負った負債、給与通帳や身分証のような書類を、本人の意思に反して所有できないなどコントロールされ、自由に移動したり離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その他これに準ずる手段 (権力の濫用、脆弱性の利用、支配管理などを含む)

上記「手段」の要素のうち、「その他これに準ずる手段」についての例示は、次のとおりである。



経済的コントロール手段

- ・事業場で不当な規則を利用し、給与・退職給与を本人の同意なしに過度に控除したり削減した。
- ・雇用または移住過程（募集・移動・入国後など）で発生した、または発生する債務、または離脱保証金による束縛として、次の中の一つ以上を経験した。
 - 自分の意思によって仕事を辞めたり、事業場を変更したりすることが難しかった。
 - 債務返済を理由に給与・退職給与を控除または削減した。
- ※（債務の例）証明書類の準備、ビザ発給、移動経費、宿泊費用、仲介手数料、事業場内での罰金、生活費名目の前払金など
- ・労働の代価として給与・退職給与をほとんど受け取れなかったり、自ら管理できな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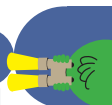
物理的コントロール手段

- ・雇用主、芸能事務所関係者、仲介人、事業場の関係者などに性暴力や肉体的暴力を受けたり、言葉の暴力を繰り返し受けた。
- ・契約条件にない、または同意しないことを強制的にさせたり、業務時間終了後にも仕事をさせた。
- ・自分の意思とは関係なく、事業場から他の事業場、店（売春店、風俗店、マッサージ店、クラブなど）から他の店に移動したり、多様な地域で働いた。
- ・宿舎に雇い主および他の人々が勝手に出入りするなど監視された。
- ・食べ物、水、生活必需品などを制限され、医療サービスを制約された。
- ・勤務先に格子が設置された窓、鍵の掛かったドア、電子監視などの保安装置で自由な移動が制約された状態で監禁された。
- ・外出するためには許可が必要であり、本人の意思に反して他の人と同行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また、外部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書信交換、電話、携帯電話など）も許可が必要だった。
- ・パスポート、身分証のような身分証明書を本人が所持できなかったり、身分証明書などの返還を要求したが断られた。



情緒的コントロール手段

- ・本人または家族や知人に危害を加えるという脅迫を受け、仕事を辞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 ・国外に追放したり、さらに悪いところへ送ると恐怖心を植え付けた。



- ・警察に通報すれば違法行為（売春、不法滞在、犯罪行為など）を行ったとして、むしろ本人が処罰されるだろうと脅した。
- ・捜査機関または裁判所に知り合いがいて警察に通報しても無駄だ、などと警察に対する不信を助長した。
- ・店（売春店、風俗店、マッサージ店、クラブなど）を脱出すれば、家族や知人などに売春した事実を暴露すると脅迫されたり、性的羞恥心を感じさせる写真や動画などを撮らせた。
- ・本人が現在いる場所の住所および位置等を全く知ることができず、雇用関係者に対する恐怖で意思疎通ができなかった。

ウ) 人身売買等の搾取「目的」に該当する項目は次のとおりである。

項 目	要 素
☐ 雇用または移住過程（募集・移動・入国後など）で発生した、または発生する債務（証明書類準備、ビザ発給、移動経費、宿泊費用、仲介手数料など）または離脱保証金に対する返済を口実に給与・退職給与を控除されたり自ら管理できなかった。	共通
☐ 自らの意思により仕事を辞められなかったり、意思に反する労働を強要された。	
☐ 売春を強要されたり、性的に搾取されたりした。	売春と性的搾取
☐ 合法的な労働条件(最低賃金、手当、労働および休憩時間、寝食提供など)が継続して保証されなかった。	労働力搾取
☐ 契約条件にはない望まない仕事を強要され、仕事をしない場合、肉体的暴力または繰り返し言葉の暴力にあった。	
☐ 当事者が臓器摘出を主張したり、身体への傷跡や傷によって違法臓器移植が疑われる。	臓器摘出等の搾取

중국어

受害者识别指标具体检查内容

(1) 被视为人口贩卖“行为”的内容如下。

内容	要素
☐ 通过本人及家庭关系,或通过就业招聘广告(印刷媒体、广播、电视、网络、社交网络服务等)与招聘方见面,并约定支付手续费(中介费、离职保证金等)。	招募
☐ 离开原居住地,前往新的住所或其他国家,并在未经事先同意的情况下与负责招聘或转移的人员同行至目的地。	运送
☐ 到达最终目的地之前,必须在禁止随意出入的场所停留一段时间。	窝藏
☐ 由负责招募或转移的人员移交给第三方。	移交 接收

(2) 被视为人口贩卖“手段”的内容如下。

内容	要素
☐ 因本人或家人遭受暴力和威胁而被迫转移,人身自由受到限制或被单独隔离。	暴力威胁 (包括暴力、威胁、强迫、 扣留、监禁、绑架)
☐ 招聘时听到(收到)的工作说明(告知)与实际所做工作或工作条件不同,但只能听从雇主提出的工作条件。	诈骗 (包括敲诈、欺骗等引诱手段)
☐ 因本人或家人向招聘方欠下的债务、工资存折或身份证等文件被强行控制,所以无法自由活动或离开。	其他手段 (包括滥用权力、利用脆弱境况、 控制管理等)



以上“手段”要素中“其他手段”的示例如下。



经济控制手段

- 用人单位利用不正当规则，未经本人同意，过度扣除或削减工资、退休金。
- 由于受到在雇佣或移居过程中 (招聘、转移、入境后等) 已经产生或正在产生的债务或离职保证金的限制，而经历了以下一种或多种情况。
 - 没有离职自主权或不能自主变更工作场所。
 - 以偿还债务为由扣除或削减工资、退休金。
- ※ (债务示例) 准备证明文件、发放签证、转移经费、住宿、中介费、工作单位罚款、以生活费为名义的预付款等
- 提供劳动后，几乎没有得到或无法亲自管理工资或退職金。



物理控制手段

- 遭受来自雇主、企划公司相关人员、中介人、用人单位相关人员等的性暴力或身体暴力，或反复遭受语言暴力。
- 被迫从事不在合同条件内或未经同意的工作，或在工作时间结束后仍被要求工作。
- 被迫从一个用人单位转移到另一个用人单位，从一个工作场所 (性交易场所、娱乐场所、按摩场所、俱乐部等) 转移至其他场所，或在不同地区工作。
- 受到监视，如雇主及其他人随意出入宿舍等。
- 食物、水、生活必需品等受到限制，医疗服务的使用受到制约。
- 因工作场所设有铁窗、门锁、电子监控等安保装置而被监禁，人身自由受到限制。
- 外出需要获得许可，且被迫与他人同行。此外，与外界的沟通 (书信交换、电话、手机等) 也需要获得准许。
- 无法自行保管护照、身份证等身份证件，或虽要求归还身份证件等但遭拒绝。



心理控制手段

- 以伤害当事人本人、家属或身边朋友来威胁当事人，使其无法离职。
- 威胁当事人将其驱逐出境或送往条件更恶劣的地方，以此制造当事人的恐惧感。

- 威胁当事人如果报警，其本人反而会因已涉嫌违法犯罪 (性交易、非法滞留、犯罪行为等) 而受到处罚，以此制造当事人的恐惧感。
- 声称在调查机关或法院有熟人，即使当事人报警也无用，以此加剧对警方的不信任。
- 威胁当事人如果逃离工作场所 (性交易场所、娱乐场所、按摩场所、俱乐部等)，便会向其家人、朋友暴露当事人进行性交易的事实，或强迫当事人拍摄引发羞耻感的色情照片及视频等。
- 当事人无法获知本人目前所在地址及位置等，且出于对雇佣方的恐惧而无法进行沟通。

(3) 被视为人口贩卖剥削“目的”的内容如下。

内容	要素
☐ 以偿还雇佣或移居过程中 (招聘、转移、入境后等) 已经产生或正在产生的债务 (准备证明文件、发放签证、移动经费、住宿费、中介费等) 或离职保证金为借口而被扣除或不能自行管理工资及退休金。	共同
☐ 没有离职自主权，或被迫从事违背自己意愿的工作。	
☐ 被迫从事性交易或遭受性剥削。	性交易与性剥削
☐ 合法的工作条件 (最低工资、津贴、工作及休息时间、食宿等) 长时间未能得到保障。	劳动力剥削
☐ 被迫从事合同条件中未包含且本人不情愿做的工作，如果不工作则会遭受身体暴力或反复的语言暴力。	
☐ 当事人声称器官被摘除或因身体伤痕而怀疑当事人曾遭受非法器官移植。	器官摘除等剥削

베트남어

Các mục kiểm tra chi tiết chỉ số nhận biết nạn nhân

A. Các hạng mục thuộc về 'hành vi' của nạn buôn người như sau.

Hạng mục	Yếu tố
☐ Chủ yếu thông qua mạng lưới liên lạc cá nhân và gia đình, hoặc thông qua quảng cáo tuyển dụng (phương thức truyền thông in ấn, radio, truyền hình, internet, mạng xã hội) để gặp gỡ môi giới và hứa hẹn trả khoản phí (phí môi giới, tiền đặt cọc, vv.).	Tuyển dụng
☐ Di chuyển từ nơi cư trú cũ đến địa chỉ mới, quốc gia khác, đi cùng với người đã tuyển dụng hoặc cùng người sắp xếp di chuyển tới điểm đến mà không có sự đồng ý trước.	Vận chuyển
☐ Trước khi đến đích cuối cùng, cần phải lưu trú tại một nơi bị hạn chế đi lại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Che dấu
☐ Được chuyển giao cho bên thứ ba bởi người tuyển dụng hoặc người đã sắp xếp di chuyển.	Bàn giao

B. Các hạng mục thuộc về 'phương thức' của nạn buôn người như sau.

Hạng mục	Yếu tố
☐ Bị đe dọa và bạo hành đối với bản thân hoặc gia đình, buộc phải di chuyển hoặc bị hạn chế tự do di chuyển và cô lập.	Bạo lực (Bao gồm bạo hành, đe dọa, ép buộc, bắt giữ, giam cầm, gây mê)
☐ Tại thời điểm tuyển dụng, đã nhận được thông tin mô tả về công việc sẽ làm, nhưng thực tế công việc và điều kiện lao động khác, nhưng không thể không tuân theo điều kiện lao động do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đưa ra.	Lừa đảo (Bao gồm lừa đảo, gian lận, xúi giục)
☐ Bản thân hoặc gia đình không thể tự do di chuyển hoặc rời đi do bị kiểm soát như nợ nhà tuyển dụng hoặc không thể sở hữu các giấy tờ như sổ tiền lương hoặc giấy tờ tùy thân trái với ý muốn.	Các phương thức khác (Bao gồm lạm dụng quyền lực, lợi dụng điểm yếu, quản lý chi phối)

Các ví dụ về 'phương thức khác' thuộc mục 'phương thức' như sau:



Phương thức kiểm soát kinh tế

- Đã sử dụng các quy tắc bất công tại nơi làm việc để khấu trừ hoặc giảm một cách quá mức tiền lương hoặc tiền trợ cấp thôi việc mà không có sự đồng ý của người lao động.
- Bị ràng buộc bởi các khoản nợ hoặc tiền bảo đảm không rời bỏ được phát sinh hoặc tồn tại trong quá trình tuyển dụng hoặc di cư (bao gồm giai đoạn tuyển dụng, di chuyển, nhập cảnh, v.v.), dẫn đến gặp phải một hoặc nhiều trường hợp sau:
 - Khó khăn trong việc nghỉ việc hoặc thay đổi nơi làm việc theo ý muốn.
 - Bị khấu trừ hoặc giảm tiền lương, tiền trợ cấp thôi việc với lý do trả nợ.
- * (Ví dụ về khoản nợ): Chuẩn bị hồ sơ chứng minh, cấp visa, chi phí di chuyển, chi phí lưu trú, phí môi giới, tiền phạt trong nội bộ nơi làm việc, tiền ứng trước dưới danh nghĩa chi phí sinh hoạt, v.v.
- Không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tiền lương hoặc trợ cấp thôi việc xứng đáng với công sức lao động, hoặc không thể tự quản lý các khoản nà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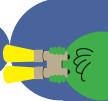
Phương thức kiểm soát vật chất

- Bị bạo lực ngôn ngữ lặp lại nhiều lần, bạo lực tình dục hoặc bạo lực thể xác từ các nhà tuyển dụng, các nhân viên trong công ty, người môi giới hoặc các quản lý trong doanh nghiệp.
- Bị ép làm công việc không có trong điều khoản hợp đồng hoặc không đồng ý, hoặc buộc phải làm việc sau giờ làm việc.
- Bị chuyển từ nơi làm việc này sang nơi làm việc khác trong cùng một cơ sở hoặc từ cơ sở này sang cơ sở khác (như dịch vụ bán dâm, giải trí, massage, câu lạc bộ và các loại cơ sở khác) mà không có sự đồng ý của bản thân.
- Bị giám sát bởi chủ lao động hoặc những người khác tự ý ra vào chỗ ở.
- Bị hạn chế về thực phẩm, nước uống, hàng hoá thiết yếu và dịch vụ y tế.
- Bị giam giữ trong tình trạng bị hạn chế di chuyển do có các thiết bị bảo mật như cửa sổ có lưới sắt, cửa khóa và giám sát điện tử được lắp đặt ở nơi làm việc.
- Cần phải có sự cho phép mới được ra ngoài và phải đi cùng người khác mặc dù không có sự đồng ý của bản thân. Ngoài ra, cũng cần phải có sự cho phép mới được giao tiếp với bên ngoài (thư từ, điện thoại, điện thoại di động, vv.).
- Không được tự mang giấy tờ như hộ chiếu, giấy tờ tùy thân như chứng minh nhân dân, dù đã yêu cầu trả lại nhưng bị từ chối.



Phương thức kiểm soát cảm xúc

5



- Không thể từ bỏ công việc vì bị đe dọa sẽ gây hại cho bản thân, gia đình hoặc người quen.
- Đã gây ra cảm giác sợ hãi bằng việc đe dọa sẽ đuổi khỏi nội địa hoặc gửi đi nơi tồi tệ hơn.
- Đã gây ra cảm giác sợ hãi bằng việc đe dọa rằng nếu báo cáo cho cảnh sát thì sẽ bị trừng phạt vì đã phạm pháp (như mại dâm, lưu trú bất hợp pháp, hành vi tội phạm, vv.).
- Gây mất lòng tin của người bị hại đối với cảnh sát bằng cách nói rằng có người quen biết trong cơ quan điều tra hoặc tòa án nên báo cảnh sát cũng vô ích.
- Bị đe dọa nếu bỏ trốn khỏi các cơ sở (cơ sở mại dâm, cơ sở giải trí, massage, câu lạc bộ...), sự việc buôn bán mại dâm sẽ bị vạch trần cho gia đình, người quen biết hoặc bị bắt chụp ảnh, quay phim gây ra cảm giác bị sỉ nhục về mặt tình dục.
- Không biết địa chỉ và vị trí hiện tại của chính mình và không thể giao tiếp vì sợ hãi nhà tuyển dụng.

C. Các hạng mục thuộc 'mục đích' bóc lột của nạn buôn người như sau:

Hạng mục	Yếu tố
☐ Bị khấu trừ tiền lương hoặc trợ cấp thôi việc, hoặc không thể tự quản lý các khoản này với lý do trả nợ phát sinh trong quá trình tuyển dụng hoặc di cư (bao gồm chuẩn bị hồ sơ chứng minh, cấp visa, chi phí di chuyển, chi phí lưu trú, phí môi giới, v.v.) hoặc trả tiền bảo đảm không rời bỏ.	Chung
☐ Không thể thôi việc theo ý muốn của bản thân, hoặc bị ép buộc phải làm việc trái với ý muốn của bản thân.	
☐ Đã bị ép buộc buôn bán mại dâm hoặc bị bóc lột tình dục.	Buôn bán mại dâm và bóc lột tình dục
☐ Điều kiện lao động hợp pháp (mức lương tối thiểu, phụ cấp, giờ làm việc và giờ nghỉ, cung cấp chỗ ăn ở v.v.) đã không được đảm bảo liên tục.	Bóc lột sức lao động
☐ Bị ép buộc phải làm việc ngoài ý muốn mà không có trong điều khoản hợp đồng, nếu không làm việc thì bị đe dọa bằng bạo lực thể xác hoặc bạo lực ngôn ngữ lặp lại nhiều lần.	
☐ Người bị hại cho rằng đã bị cắt bỏ cơ quan nội tạng hoặc nghi ngờ có chuyện cấy ghép nội tạng bất hợp pháp do có dấu vết hoặc vết thương trên cơ thể.	Lấy đi nội tạng và chiếm đoạt

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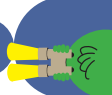
ราย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ของตัวชี้วัดการคัดแยกผู้เสียหาย

ก. รายการที่เกี่ยวข้องในหมวด “การกระทำ” ของการค้ำนุชยมีดังต่อไปนี้

รายการ	องค์ประกอบ
☐ ได้มีการตกลงที่จะพบผู้จัดหาผ่านทาง การติดต่อส่วนบุคคล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หรือผ่านทาง ประกาศรับสมัครงาน (สื่อสิ่งพิมพ์, วิทยุ, โทรทัศน์, อินเทอร์เน็ต, 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 ฯลฯ) โดยมี การตกลงจะจ่า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ค่านายหน้า, ค่ามัดจำกรณีย้ายงาน ฯลฯ)	การรับสมัคร
☐ ได้เดินทางออกจากที่อยู่เดิมไปยังที่อยู่ใหม่หรือประเทศอื่น โดยเดินทางพร้อมกับผู้จัดหาหรือ ผู้จัดการการเดินทางโดย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ยินยอมล่วงหน้า	การเดินทาง
☐ ต้องพักอยู่ในสถานที่ที่มีการ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ออก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หนึ่งก่อนที่จะเดินทางไปถึงจุด หมายปลายทาง	การขออนตัว
☐ ถูกผู้จัดหาหรือผู้จัดการการเดินทางส่งตัวไปให้กับบุคคลที่สาม	การส่งตัว การรับช่วงต่อ

ข. รายการที่เกี่ยวข้องในหมวด “วิธีการ” ของการค้ำนุชยมีดังต่อไปนี้

รายการ	องค์ประกอบ
☐ ถูกบังคับให้เคลื่อนย้ายหรือถูกจำกัดเสรีภาพในการเคลื่อนย้าย หรือถูก กักขังโดยมีการใช้ความรุนแรงและมีการข่มขู่ทั้งต่อตัวผู้เสียหายหรือ ครอบครัว	การใช้กำลัง (รวมถึงการ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 ข่มขู่, บังคับ, จับกุม-คุมขัง, การลักพาตัว)
☐ แม้ว่าเนื้องานและสภาพการทำงานจริงจะแตกต่างจากสิ่งที่เคยได้รับการ แจ้งไว้ตอนรับสมัครงาน แต่ก็ไม่มีทางเลือกอื่นนอกจาก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 เงื่อนไขการทำงานที่นายจ้างเสนอ	การใช้กลลวง (รวมถึงการฉ้อโกง-หลอกลวง)
☐ ถูกควบคุมเสรีภาพในการเคลื่อนย้ายหรือไม่สามารถออกจากสถานที่ ทำงานได้ เนื่องจากหนี้สินที่ตนเองหรือครอบครัวติดผู้จัดหาไว้ หรือ โดนยึดเอกสารสำคัญต่างๆ เช่น สมุดบัญชีเงินเดือนหรือ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 ประชาชน	วิธีการอื่นที่เทียบเท่า (รวมถึงการใช้อำนาจในทางที่ผิด, การใช้จุดอ่อน, การควบคุมครอบงำ)



ในองค์ประกอบของ 'วิธีการ' ข้างต้น ตัวอย่างของ 'วิธีการอื่นที่เทียบเท่า' มีดังนี้



วิธีการควบคุม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 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ใช้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ฎระเบียบ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เพื่อหัก/ลดค่าจ้างหรือเงินเกษียณอายุของพนักงานมากเกินไปจนเกิดความจำเป็นโดย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ยินยอมจากพนักงาน
- เนื่องจากหนี้สินที่เกิดขึ้นในระหว่า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หรือการย้ายถิ่นฐาน (การรับสมัคร, การเดินทาง, ค่าใช้จ่ายหลั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ฯลฯ) หรือข้อมูลผิดในเรื่องค่ามัดจำกรณีย้ายงาน ทำให้ได้รับ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อย่างใดอย่างหนึ่งหรือหลายอย่างดังต่อไปนี้
 - ไม่สามารถลาออกหรือ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ตามความประสงค์ของตนเองได้
 - เงินเดือนหรือเงินเกษียณอายุถูกหักหรือลดลงเนื่องจากต้องนำมาชำระหนี้
- ※ (ตัวอย่างหนี้ดังกล่าว) ค่าจัดเตรียมเอกสาร, ค่าวิชา, ค่าเดินทาง, ค่าที่พัก, ค่านายหน้าจัดหางาน, ค่าปรับที่เกิดขึ้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 เงินจ่ายล่วงหน้าค่าครองชีพ ฯลฯ
- ทำงานแต่ได้รับเงินเดือนหรือเงินเกษียณอายุเพียงเล็กน้อยหรือไม่ได้เลย อีกทั้งยังไม่สามารถจัดการเงินเดือนได้ด้วยตนเอง



วิธีการควบคุมทางกายภาพ

- ถูกนายจ้าง, ตัวแทนจากบริษัท, นายหน้า, หรือบุคคล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 ฯลฯ 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เพศหรือใช้ความรุนแรงทางร่างกาย หรือถูกล่วงละเมิดด้วยวาจาซ้ำๆ
- ถูกบังคับให้ทำงาน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เงื่อนไขในสัญญ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หรือถูกใช้ให้ทำงานหลังเวลาเลิกงาน
- ถูกบังคับให้ย้าย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หรือสถานบริการไปยังสถานที่อื่น(เช่น สถานบริการทางเพศ, สถานบันเทิง, ร้านนวด, ผับ ฯลฯ) โดยไม่สมัครใจ
- ถูกนายจ้างหรือบุคคลอื่นๆควบคุมหรือตรวจสอบโดยบุคคลเหล่านั้นสามารถเข้าออกที่พักได้ตามอำเภอใจ
- มีการจำกัดอาหาร, น้ำ และสิ่งของจำเป็น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ต่างๆ รวมทั้ง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ถึง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 ถูกกักขัง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โดยการติดตั้งอุปกรณ์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เช่น หน้าต่างที่มีลูกกรง, ประตูล็อก, กล้องวงจรปิด ซึ่งทำให้ไม่สามารถเคลื่อนย้ายได้อย่างอิสระ
- ต้องได้รับอนุญาตถ้าหากต้องการออกนอกสถานที่ และอาจต้องมีผู้ติดตามไปด้วยแม้ว่าจะไม่สมัครใจก็ตาม นอกจากนี้การติดต่อกับบุคคลภายนอก (เช่น การส่งจดหมาย, การติดต่อผ่านโทรศัพท์, 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 ฯลฯ) จำเป็นต้องได้รับอนุญาต
- ไม่สามารถครอบครอง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หรือ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ได้ด้วยตัวเอง หรือมีการขอเอกสารแสดงตนต่างๆคืนแต่ถูกปฏิเสธ



วิธีการควบคุมทางอารมณ์

- ไม่สามารถลาออกจากงานได้เนื่องจากถูกข่มขู่ว่าจะทำร้ายตนเอง ครอบครัว หรือคนรู้จัก
- สร้างความหวาดกลัวด้วยการข่มขู่ว่าจะขับไล่ออกจากประเทศหรือส่งไปยังสถานที่ที่แย่กว่าเดิม
- สร้างความหวาดกลัวด้วยการข่มขู่ถ้าแจ้งความกับตำรวจ ตนเองจะถูกลงโทษเนื่องจาก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 (เช่น การค้าประเวณี การอยู่เกินวีซ่า 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กฎหมายอื่นๆ)
- ถูกทำให้ไม่เชื่อมั่นใน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 ด้วยการข่มขู่ว่ามีคนรู้จักในหน่วยงานสืบสวนหรือตุลาการ ทำให้การแจ้งความไม่เกิดผล
- ถูกข่มขู่หากหนีจาก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 (เช่น สถานค้าประเวณี สถานบันเทิง ร้านวด ผับ ฯลฯ) จะเปิดเผยเรื่องการค้าประเวณีให้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คนรู้จักทราบ หรือถูกบังคับให้ถ่ายรูปและวิดีโออันก่อให้เกิดความรู้สึกอับอายทางเพศ
- ไม่อาจทราบที่อยู่และตำแหน่งที่อยู่ของตนเองในปัจจุบันได้เลย และไม่สามารถสื่อสารได้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รู้สึกกลัวที่มีต่อผู้ว่าจ้าง

ค. วัตถุประสงค์ของการแสวงหา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ค้ามนุษย์มีดังนี้

รายการ	องค์ประกอบ
☐ ถูกหัก/ลดเงินเดือนหรือเงินเกษียณอายุ หรือไม่สามารถจัดการเงินเดือนได้ด้วยตนเอง เนื่องจากนายจ้างอ้างว่ามีหนี้สินที่เกิดขึ้นในระหว่า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หรือการย้ายถิ่นฐาน (การรับสมัคร, การเดินทาง, ค่าใช้จ่ายหลั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ฯลฯ) หรือหนี้สินอื่นๆ (ค่าเตรียมเอกสาร, ค่าวีซ่า, ค่าเดินทาง, ค่าที่พัก, ค่านายหน้า จัดหางาน ฯลฯ) หรือข้อผูกมัดในเรื่องค่ามัดจำกรณีย้ายงาน เป็นต้น	ทั่วไป
☐ ไม่สามารถลาออกจากงานได้อย่างอิสระ หรือถูกบังคับให้ทำงานที่ขัดต่อความประสงค์ของตนเอง	
☐ ถูกบังคับให้ค้าประเวณีหรือถูกแสวงหา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เพศ	การค้าประเวณีและการแสวงหา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เพศ
☐ ไม่มีการรับรองเงื่อนไขการทำงานที่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เช่น ค่าแรงขั้นต่ำ เบี้ยเลี้ยง ชั่วโมงการทำงานและเวลาพัก การจัดหาที่พัก ฯลฯ)	การแสวงหา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แรงงาน
☐ ถูกบังคับให้ทำงานที่ไม่สมควรใจซึ่งงานดังกล่าวไม่ได้ระบุในเงื่อนไขสัญญา และถูก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หรือถูกล่วงละเมิดด้วยวาจาซ้ำๆหากไม่ยอมทำงาน	
☐ ผู้เสียหายอ้างว่ามีการถูกตัดอวัยวะหรือมีร่องรอยบาดแผลที่น่าสงสัยว่าอาจ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ปลูกถ่ายอวัยวะ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ารแสวงหาผล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ค้าอวัยวะ

우즈베키스탄어

Jabrlanuvchini aniqlash ko'rsatkichlari uchun batafsil tekshirish elementlari

A. Odam savdosi kabi "harakatlarga" mos keladigan moddalar quyidagilardir.

Bo'lim	Elementlar
☐ O'zining yoki oilasining aloqa tarmog'i orqali yoki ish e'lonini (bosma OAV, radio, televideniya, internet, ijtimoiy tarmoq xizmati va h.k.) ko'rganimdan so'ng, ishga yollovchi bilan uchrashish va to'lovni (vositachilik to'lovi, ketish depoziti va h.k.) to'lashga va'da berish.	ishga qabul qilish
☐ Yashash joyini tark etib, yangi manzilga va boshqa davlatga ko'chib o'tishgan va ularni ishga qabul qilgan yoki oldindan rozilgisiz o'z manziliga ko'chirgan shaxsga hamrohlik qilish.	Ko'chish
☐ Yakuniy manzilga yetib borishdan oldin kirish-chiqish taqiqlangan joyda ma'lum vaqt turishi kerak edi.	yashirinish
☐ Ishga olgan yoki ko'chiruvchi shaxs tomonidan uchinchi shaxsga topshirilgan.	odamlarni ko'chirish

B. Odam savdosining "vositalari" va boshqalarga mos keladigan narsalar quyidagilardir.

Bo'lim	Elementlar
☐ Shaxsga yoki uning oilasiga tajovuz yoki tahdid tufayli, shaxs o'z xohishiga qarshi harakat qilgan yoki erkin harakatlanishi cheklangan yoki izolyatsiya qilingan.	Kuch ishlatish (Jumladan, hujum, tahdid, majburlash, hibsga olish/qamoq, o'g'irlash)
☐ Ishga qabul qilish vaqtida haqiqiy ish sharoitlari qanday ish qilish haqida tushuntirish (xabar) sifatida eshitgandan (qabul qilganimdan) farq qilsa ham Ish beruvchi tomonidan ko'rsatilgan sharoitlariga rioya qilishdan boshqa iloji yo'q edi.	ierarxiya (Shu jumladan firibgarlik va aldash kabi aldashshlar)
☐ Shaxsning yoki oila a'zosining ishga yollovchiga qarzi, shaxsning xohishiga qarshi ish haqi hisobvarag'i yoki shaxsiy guvohnoma kabi hujjatlarga ega bo'la olmasligi va h.k. kabi nazorat tufayli ular bemalol harakatlana olmadilar yoki keta olmadilar.	Boshqa ekvivalent vositalar (Jumladan, vakoliytni suiiste'mol qilish, zaiflikdan foydalanish, boshqaruv va boshqalar)

Yuqoridagi "vosita" elementlari orasida "boshqa ekvivalent vositalar" misollari quyidagilardir.



iqtisodiy nazorat vositalari

- Ish joyida noqonuniy qoidalar orqali maosh yoki nafaqani o'z roziligisiz ortiqcha ushlab qolish yoki kamaytirishi.
- Ishga joylashish yoki ko'chish jarayonida (yig'ilish, ko'chish, kirish va boshqalar) yuzaga kelgan yoki keladigan qarzlarni yoki boshqa garov harajatlari tufayli quyidagi holatlardan birini boshdan kechirgan bo'lsangiz:
 - O'z ixtiyoriga ko'ra ishni tashlash yoki ish joyini o'zgartirish qiyin bo'lishi.
 - Qarzlarni to'lash uchun maosh yoki nafaqani ushlab qolish yoki kamaytirishi.
- * (Qarz misollari) hujjatlarni tayyorlash, viza olish, yo'l xarajatlari, turar joy xarajatlari, vositachilik xarajatlari, ish joyidagi jarimalar, kundalik hayot uchun oldindan to'lovlar va boshqa to'lovlarni mavjudligi.
- Mehnat uchun maosh yoki nafaqani juda kamligi va o'z hisobini o'zi boshqaraolmasligi.



Jismoniy nazorat choralari

- Ish beruvchingiz, agentlik vakilingiz, brokeringiz yoki ish joyingiz vakili tomonidan jinsiy yoki jismoniy zo'ravonlik yoki takroriy og'zaki haqoratga uchragansiz.
- Shartnoma shartlarida bo'lmagan yoki kelishilmagan ishlarni bajarishga majburlash yoki ish vaqti tugaganidan keyin ham ishga buyurish.
- Bir ish joyidan ikkinchisiga, bir korxonadan boshqasiga ko'chgan (fohishaxona, ko'ngilochar muassasa, massaj, klub va boshqalar) yoki o'z xohishiga qarshi turli sohalarda ishlagan.
- Yotoqxona beruvchilar va boshqa odamlar o'zlari xohlagancha kelib ketib yotoqxonani kuzatishgan.
- Oziq-ovqat, suv va kundalik ehtiyojlar cheklangan, tibbiy xizmatlar cheklangan.
- Ishlayotgan joyda qamalib qolish, erkin harakatlanish mumkin bo'lmagan panjarali derazalar, qulflangan eshiklar va elektron kuzatuv kabi xavfsizlik choralari bilan cheklanish.
- Tashqariga chiqish uchun ruxsat talab qilinar, o'z xohishiga qarshi boshqa odam hamroh bo'lishi kerak bo'lishi. Bundan tashqari, tashqi dunyo bilan aloqa qilish (xat almashish, telefon, mobil telefon va boshqalar) uchun ruxsat talab qilinishi.
- Pasport yoki ID karta kabi shaxsingizni tasdiqlovchi hujjatingiz bo'lmasa, siz ID kartangizni qaytarib berishni so'ragan bo'lishingiz mumkin, ammo u rad etilgan.



- O'zinga, oilamga yoki tanishlaringizga zarar yetkazish, degan tahdidlar tufayli ishimni tashlab keta olmaslik.
- Mamlakatdan haydab yuborish yoki yomonroq joyga yuborish qo'rquvni paydo qilish.
- Ular politsiyaga xabar qilsalar, qonunga xilof harakat (fohishalik, noqonuniy bo'lish, jinoiy faoliyat va h.k.) sodir etganliklari uchun jazolanadilar, degan qo'rquvni paydo qilish.
- Politsiyaga xabar berishning foydasi yo'q, chunki tergov organi yoki sudda kimnidir taniyman deb politsiyaga bo'lgan ishinchni yo'qotish.
- Ushbu biznesdan chiqish (fohishaxona, ko'ngilochar muassasa, massaj saloni, klub va h.k.), sizni fohishaligingizni oilangiz va tanishlaringizga oshkor qilish bilan tahdid qilishadi yoki sizni jinsiy kamsitilgandek his qiladigan fotosuratlar va videolarni olishga majburlash.
- Hozirgi manzilimni yoki joylashuvni umuman bilmasdan, ish beruvchidan qo'rqib, aloqaga chiqqa olmaslik.

C. Inson savdosi kabi ekspluatatsiyaning "maqsadiga" mos keladigan narsalar quyidagilardir.

Bo'lim	elementlar
☐ Ishga joylashish yoki ko'chish jarayonida (yig'ish, ko'chish, kirish va boshqalar) yuzaga kelgan yoki kelayotgan qarzarlar (hujjatlarni tayyorlash, viza olish, yo'l xarajatlari, turar joy xarajatlari, vositachilik haqi va boshqalar) yoki boshqa garov xarajatlariga bog'liq qarzlarni to'lashni bahona qilib, maosh yoki nafaqadan ushlab qolishi yoki o'z hisobini o'zi boshqaraolmasligi.	umumiy
☐ O'z xohishlari bilan ishlashni to'xtata olmaslik yoki o'z xohishlariga qarshi ishlashga majbur bo'lish.	
☐ Fohishalikka majburlash yoki jinsiy ekspluatatsiya qilish.	Fohishalik va jinsiy ekspluatatsiya
☐ Qonuniy mehnat sharoitlari (eng kam ish haqi, nafaqalar, ish va dam olish vaqti, xona va ovqat va boshqalar) doimiy kafolatlanmagan..	
☐ O'zlarining shartnoma shartlarida bo'lmagan istalmagan ishlarni bajarishga majbur qilinish, agar ishni bajarmagan bo'lsa, jismoniy yoki takroriy og'zaki haqoratlarga duchor bo'lish.	mehnat ekspluatatsiyasi
☐ Agar shaxs o'z organlari chiqarib tashlanganini da'vo qilsa yoki uning tanasida izlar yoki jarohatlar mavjud bo'lib, noqonuniy organ ko'chirib o'tkazishga shubha paydo bo'lsa.	Organ chiqarib tashlash va boshqa ekspluatatsiya turlari

필리핀 파갈로그어

Detalyadong mga Item ng Mga Tagapagpahiwatig ng Pagkilala sa Biktima

A. Ang mga bagay na naaayon sa mga 'gawain' tulad ng human trafficking ay ang mga sumusunod.

Item	Elemento
☐ Sa pamamagitan ng sariling contact network o ng pamilya, o pagkatapos makakita ng adbertismo ng trabaho (print media, radyo, telebisyon, Internet, social network, atbp.), nakipagkita sila sa isang recruiter at nangakong magbabayad (placement fee, departure deposit, atbp.).	Rekrut
☐ Umalis sa tinitirhan, lumipat sa isang bagong address, nangibang bansa, at sinamahan ng taong nag-rekrut sa kanila o ng taong napag-utusan upang samahan silang lumipat sa kanilang destinasyon nang walang pahintulot.	Lipat
☐ Bago maabot ang huling destinasyon, kailangan nilang manatili sa isang lugar na ipinagbabawal ang pagpasok-labas sa isang tiyak na tagal ng panahon.	Tago
☐ Ipinaubaya sila ng taong nag-rekrut o ng taong naglipat sa kanila sa isa pang ibang tao.	Take over

B. Ang mga bagay na naaayon sa mga 'paraan' tulad ng human trafficking ay ang mga sumusunod.

Item	Elemento
☐ Dahil sa pananakit o pagbabanta laban sa kanila o sa kanilang pamilya, sila ay inilipat nang labag sa kanilang kalooban, o pinaghihigpitan ang kanilang malayang paggalaw, o sila ay hinihiwalay.	Kapangyarihan (Kabilang ang pananakit, pagbabanta, pamimilit, pag-aresto/pagkulong, pagkidnap)
☐ Bagama't iba ang aktwal na trabaho at kondisyon sa trabaho na ipinaliwanag sa kanila tungkol sa kung anong uri ng trabaho ang gagawin at oras sa panahon ng pag-rekrut, wala silang magawa kundi sundin ang mga kondisyon sa pagtatrabaho na sinabi ng employer.	Ranggo (Kabilang ang mga panghihikayat tulad ng pandaraya at panlilinlang)
☐ Hindi sila makagalaw o makaalis nang malaya dahil kinokontrol sila sa kadahilanang may utang sila o ang kanilang pamilya sa recruiter, o dahil hindi nila hawak ang kanilang mga dokumento tulad ng mga salary bankbook o ID na hindi kailanman ibinigay sa kanila.	Iba pang katumbas na paraan (Kabilang ang pag-abuso sa kapangyarihan, pagsasamantala sa kahinaan, pamamahala, atbp.)

Kabilang sa mga elementong 'paraan' sa itaas, ang mga halimbawa ng 'iba pang katumbas na paraan' ay ang mga sumusunod.

5



Ekonomikong Pagkontrol

- Sa lugar ng trabaho, ang suweldo ay labis na binabawasan o ang benepisyo sa pagreretiro ay pinutol nang walang pahintulot ng empleyado gamit ang hindi makatarungang mga patakaran.
- Nakaranas ng isa o higit pa sa mga sumusunod bilang pagkakaroon ng mga obligasyon sa utang o deposito sa pag-alis na lumitaw sa panahon ng pagproseso ng pag-hire sa trabaho o paglipat (pagkatapos ng pag-rekrut, paglipat, pagpasok sa bansa, atbp.)
 - Mahirap ang paghinto sa trabaho o ang magpalit ng lugar ng trabaho ayon sa sariling kagustuhan.
 - Dahil sa kailangang magbayad ng utang, binawasan ang suweldo o pinutol ang benepisyo sa pagreretiro.
- * (Mga halimbawa ng utang) Paghahanda ng mga dokumento, pagpapa-isyu ng visa, pamasahé, bayad sa tirahan, bayad sa broker, multa sa lugar ng trabaho, paunang bayad para sa mga gastusin sa pamumuhay, atbp.
- Hindi natanggap nang maayos ang sahod o benepisyo sa pagreretiro bilang kabayaran sa trabaho, o hindi binigyan ng pagkakataong pamahalaan ang kita.



Pisikal na Pagkontrol

- Nasa ilalim ng sekswal o pisikal na karahasan, o paulit-ulit na pagmumura ng employer, mga may koneksyon sa may-ari, broker, o kinatawan ng lugar ng trabaho.
- Pinilit na gumawa ng trabaho nang wala sa mga kondisyon ng kontrata o hindi napagkasunduan, o pinagtrabaho kahit tapos na ang oras ng trabaho.
- Anuman ang kanilang kalooban, inilipat sila mula sa isang negosyo patungo sa isa pa, mula sa isang establisyimento (prostitusyon, establisyimento ng entertainment, massage parlor, club, atbp.) patungo sa isa pa, o pinagtrabaho sa iba't ibang lugar.
- Sila ay sinusubaybayan, ang mga employer at iba pang mga tao ay malayang pumapasok at lumalabas sa kanilang kuwarto.
- Ang pagkain, tubig, at pang-araw-araw na pangangailangan ay pinaghigpitan, pati na rin ang mga serbisyong medikal.
- Sa lugar na kanilang pinagtatrabahuhan, sila ay ikinulong at hindi malayang makagalaw dahil sa mga kagamitang pangseguridad tulad ng mga rehas sa bintana, naka-lock na pinto, at elektronikong pagmamamanman.
- Kinakailangan ang pahintulot na lumabas, at kailangang samahan ng isang tao na kahit na labag sa kanilang kalooban. Bukod pa rito, kinakailangan nilang humingi ng pahintulot para makipag-usap sa mga tao sa labas (pagpapalitan ng mga mensahe, pagtawag, paggamit ng mobile phone, atbp.).
- Hindi hawak ang kanilang mga dokumento ng pagkakakilanlan tulad ng pasaporte at ID, at kahit hilingin nila ang mga ito ay tinatanggihan s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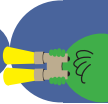


Emosyonal na Pagkontrol

- Hindi nila kayang huminto sa trabaho dahil sa mga banta sa kanila, sa kanilang pamilya, o sa kanilang mga kakilala.
- Tinakot silang ipadeport sa ibang bansa o ipadala sa mas masamang lugar.
- Tinakot sila na kapag sila ay magsusumbong sa pulis ay ipapalabas nilang sila pa ang makukulong dahil sa mga ilegal na gawain (tulad ng prostitusyon, ilegal na pananatili, o paggawa ng krimen).
- Sinasabihan sila ng mga bagay upang mawalan sila ng tiwala sa pulisya, tulad ng pagsasabi na walang silbi ang pag-uulat sa pulisya dahil may kakilala sila sa ahensya ng imbestigasyon o korte.
- Binantaan sila na kapag sila ay tumakas mula sa establisyimento (prostitusyon, establisyimento ng entertainment, massage parlor, club, atbp.), ang katotohanan ng prostitusyon ay malalantad sa kanilang pamilya at mga kakilala, o kukuhanan sila ng larawan o video na maaari nilang maramdaman ang sekswal na kahihyan.
- Hindi alam ang kasalukuyang address o lokasyon, at hindi magawang makipag-usap dahil sa takot sa employer.

C. Ang mga bagay na naaayon sa mga 'layunin'ng pagsasamantala tulad ng human trafficking ay ang mga sumusunod.

Item	Elemento
☐ Hindi nila napamahalaan ang kanilang suweldo o hindi nakatanggap ng benepisyo sa pagreretiro sa kadahilanang kailangan pa nilang bayaran ang obligasyon sa utang (paghahanda ng mga dokumento, pagpapa-isyu ng visa, pamasaha, bayad sa tirahan, deposito sa pag-alis, atbp.) pati narin ang deposito sa pag-alis na lumitaw sa panahon ng pagproseso ng pag-hire sa trabaho o paglipat(pagkatapos ng pag-rekrut, paglipat, pagpasok sa bansa, atbp.)	Karaniwan
☐ Hindi sila makaalis sa trabaho ayon sa kanilang sariling kagustuhan, o pinilit silang magtrabaho nang gawaing labag sa kanilang kalooban.	Prostitusyon
☐ Pinilit silang gawin ang prostitusyon o sekswal na pinagsamantalahan.	at seksuwal na pagsasamantala
☐ Ang mga lehitimong kondisyon sa pagtatrabaho (minimum na sahod, mga allowance, oras ng trabaho at pahinga, pagkakaloob ng tirahan, atbp.) ay patuloy na hindi ginagarantiyahan.	Pagsasamantala sa paggawa
☐ Pinilit silang gumawa ng mga trabahong ayaw nila na wala sa mga kondisyon ng kanilang kontrata, at kung hindi nila gagawin ang trabaho, sila ay pisikal na sasaktan o paulit-ulit na mumurahin.	Pagsasamantala tulad ng pag-aani ng organ
☐ Naghinalang may nangyayaring iligal na paglipat ng organ dahil ang kinauukulan ay inaangkin ang pag-aani ng organ o may mga bakas o sugat sa katawan.	



5

ប្រការត្រួតពិនិត្យលទ្ធផលសម្រាប់សូចនាករកំណត់អត្តសញ្ញាណជនរងគ្រោះ

ក. ប្រការដែលកំណត់អំពី 'ទង្វើ' ដូចជាការជួញដូរមនុស្សមានដូចខាងក្រោម៖

ប្រការ	ចំណុចសំខាន់
☐ អ្នកបានទទួលព័ត៌មានតាមរយៈបណ្តាញទំនាក់ទំនងផ្ទាល់ខ្លួន ឬត្រូវបាន ឬតាមរយៈការផ្សាយពាណិជ្ជកម្មការងារ(ក្រដាសផ្សព្វផ្សាយ វិទ្យុ ទូរទស្សន៍ អ៊ីនធឺណែត សេវាបណ្តាញសង្គម។ល។)ហើយអ្នកបានជួបជាមួយអ្នកជ្រើសរើសបុគ្គលិក ដោយអ្នកបានសន្យាថានឹងបង់ថ្លៃសេវា (ថ្លៃឈ្នួលកណ្តាល ឬប្រាក់ធានាធ្វើដំណើរ។ល។)ទៅកាន់ពួកគេ។	ការជ្រើសរើស
☐ អ្នកបានចាកចេញពីកន្លែងរស់នៅ ឬផ្លាស់ទៅអាសយដ្ឋានថ្មី ឬបានផ្លាស់ប្តូរទៅប្រទេសមួយផ្សេងទៀត និងធ្វើដំណើរទៅជាមួយអ្នកជ្រើសរើសបុគ្គលិក ឬអ្នកដែលជូនដំណើរទៅកាន់ទីតាំងគោលដៅដោយគ្មានការយល់ព្រមជាមុនពីអ្នក។	ការដឹកជញ្ជូន
☐ មុននឹងទៅដល់ទីតាំងគោលដៅចុងក្រោយ អ្នកត្រូវនៅកន្លែងណាមួយដោយត្រូវបានហាមឃាត់មិនអោយចេញចូលនៅក្នុងរយៈពេលជាក់លាក់ណាមួយ។	ការលាក់បំបាំង
☐ អ្នកត្រូវបានប្រគល់ទៅអោយជនទី3 តាមរយៈអ្នកជ្រើសរើសបុគ្គលិក ឬអ្នកដែលជូនដំណើរអ្នក។	ការផ្ទេរ

ខ. ប្រការដែលកំណត់អំពី 'មធ្យោបាយ' ដូចជាការជួញដូរមនុស្សមានដូចខាងក្រោម៖

ប្រការ	ចំណុចសំខាន់
☐ អ្នកត្រូវបានហាមឃាត់មិនអោយធ្វើការផ្លាស់ទីដោយសេរី ឬធ្វើការផ្លាស់ទីតាំងផ្ទុយពីគោលបំណងអ្នកចង់ទៅ ដោយសារពួកគេបានគំរាមកំហែង និងប្រើអំពើហិង្សាលើអ្នកផ្ទាល់ ឬ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អ្នក។	អំណាច (រួមទាំងការវាយដំ ការគំរាមកំហែង ការបង្ខិតបង្ខំ ការចាប់ខ្លួន និងឧប្ប័យាំង ការចាប់ពង្រត់)
☐ ទោះបីជាការងារ និងលក្ខខណ្ឌការងារជាក់ស្តែងខុសពីអ្វីដែលអ្នកបានស្តាប់ (បានទទួល) ការពន្យល់(សេចក្តីជូនដំណឹង) អំពីប្រភេទការងារដែលអ្នកនឹងធ្វើនៅពេលជ្រើសរើសក៏ដោយ ក៏អ្នកគ្មានជម្រើសអ្វីក្រៅពីធ្វើតាមលក្ខខណ្ឌការងារដែលបង្ហាញដោយនិយោជកឡើយ។	ហានិភ័យ (រាប់បញ្ចូលទាំងការបញ្ឆោតដូចជាការក្លែងបន្លំ និងការបោកប្រាស់)
☐ អ្នកត្រូវបានហាមឃាត់មិនអោយធ្វើការផ្លាស់ទីដោយសេរីដោយសារអ្នក ឬគ្រួសាររបស់អ្នកជំពាក់បំណុលអ្នកជ្រើសរើសបុគ្គលិក ឬអ្នកមិនមានឯកសារដូចជាឯកសារឆ្លងដែន ឬអត្តសញ្ញាណប័ណ្ណជាប់ស្ទង់។	មធ្យោបាយស្រដៀងគ្នាផ្សេងទៀត (រួមទាំងការបំពានអំណាច ការកេងប្រវ័ញ្ច ភាពងាយរងគ្រោះ ការគ្រឿងសង្កត់។ល។)

ក្រៅពីចំណុចសំខាន់ៗនៃ ‘មធ្យោបាយ’ ខាងលើ គឺមានមធ្យោបាយផ្សេងទៀតដូចឧទាហរណ៍ខាងក្រោម។



មធ្យោបាយនៃការគ្រប់គ្រងសេដ្ឋកិច្ច

- កន្លែងធ្វើការបានប្រើប្រាស់ច្បាប់ដែលមិនមានភាពយុត្តិធម៌ ដើម្បីកាត់ប្រាក់បៀវត្សរ៍ និងប្រាក់ចូលនិរត្តន៍យ៉ាងច្រើនលើសលប់ដោយគ្មានការយល់ព្រមពីនិយោជិត។
- អ្នកធ្លាប់ទទួលរង់ពិសោធន៍ដូចខាងក្រោមលើសពីមួយ ដូចជា ជាប់មានបំណុលដែលបានកើតឡើងនៅពេលដែលត្រូវបានជ្រើសរើសជាពលករ ឬនៅក្នុងពេលដែលធ្វើអន្តោប្រវេសន៍ (ការជ្រើសរើសពលករ ការធ្វើដំណើរ និងការនាំចូលប្រទេស) ។
 - អ្នកមានផលវិបាកនៅពេលចង់ប្តូរកន្លែងការងារ ឬចង់ឈប់ពីការងារដោយខ្លួនអ្នកផ្ទាល់។
 - ប្រាក់បៀវត្សរ៍ និងប្រាក់ចូលនិរត្តន៍ត្រូវបានកាត់ដោយសារតែមូលហេតុជាប់កាតាព្វកិច្ចសងបំណុល។
- ※ (ឧទាហរណ៍នៃបំណុល) ការរៀបចំឯកសារពាក់ ការចេញទិដ្ឋាការ ការចំណាយលើការធ្វើដំណើរ ថ្លៃស្នាក់នៅ ថ្លៃឈ្នួញកណ្តាល ការផាកពិន័យនៅកន្លែងធ្វើការ ការបង់ប្រាក់ជាមុនសម្រាប់ការចំណាយក្នុងការរស់នៅ។ល។
- អ្នកត្រូវបានកាត់ប្រាក់បៀវត្សរ៍ និងប្រាក់ចូលនិរត្តន៍តិចតួចជាថ្លៃនឹងពលកម្ម ឬមិនអាចគ្រប់គ្រងប្រាក់ទាំងនោះដោយខ្លួនអ្នកផ្ទាល់បាន។



វិធានការត្រួតពិនិត្យរាងកាយ

- អ្នកបានរង់អំពើហិង្សាផ្លូវភេទ ឬអំពើហិង្សាលើរាងកាយ ឬអំពើហិង្សាដោយពាក្យសំដីដែលរារាំងនិយោជក ជនពាក់ព័ន្ធនិងក្រុមហ៊ុនរៀបចំផែនការ មេឡូល បុគ្គលដែលធ្វើការនៅកន្លែងធ្វើការ។
- អ្នកត្រូវបានបង្ខំអោយធ្វើការដែលមិនស្ថិតក្នុងលក្ខខណ្ឌនៃកិច្ចសន្យា ឬយល់ព្រមធ្វើ ឬបង្ខំអោយធ្វើការថែមម្តងទៀតដើម្បីទទួលបានប្រាក់បៀវត្សរ៍ដោយ។
- ថៅកែរបស់អ្នកបានធ្វើការផ្លាស់ទីអ្នកពីកន្លែងធ្វើការមួយ ទៅកន្លែងធ្វើការមួយផ្សេងទៀត (កន្លែងពេស្យាកម្ម កន្លែងកម្សាន្ត ហាងម៉ាស្សា ក្លឹបកំសាន្ត។ល។) ឬអោយធ្វើការនៅតំបន់ផ្សេងៗជាច្រើន។
- អ្នកត្រូវបានសង្កេតខណៈពេលនិយោជន និងមនុស្សផ្សេងៗទៀតបានចេញចូលតាមចិត្តនៅកន្លែងស្នាក់នៅរបស់អ្នក។
- អាហារ ទឹក និងសម្ភារៈប្រើប្រាស់ប្រចាំថ្ងៃត្រូវបានកាត់ ហើយសេវាវេជ្ជសាស្ត្រក៏ត្រូវបានហាមឃាត់នៅក្នុងកំរិតណាមួយ។
- អ្នកត្រូវបានឃុំឃាំងដោយមិនអនុញ្ញាតអោយធ្វើការបំផ្លាស់ទីដោយសេរីនោះទេ ដោយសារការខ្ចោះរនុកបង្ខំ ការបិទទ្វារ និងការឃ្លាំមើលតាមប្រព័ន្ធសុវត្ថិភាពដូចជា ការម៉ៅ។
- ពេលដែលចេញក្រៅអ្នកត្រូវការការអនុញ្ញាត និងត្រូវធ្វើដំណើរទៅមួយអ្នកដទៃផ្សេងទៀតដែលខុសពីគោលបំណងរបស់អ្នក។ លើសពីនេះទៅទៀត អ្នកត្រូវការការអនុញ្ញាតសម្រាប់ការប្រាស្រ័យទាក់ទងជាមួយពិភពខាងក្រៅ (ការផ្លាស់ប្តូរសំបុត្រជាអក្សរ ការហៅទូរស័ព្ទ និងការហៅទូរស័ព្ទចល័ត។ល។)
- ករណីអ្នកមិនមានឯកសារបញ្ជាក់អត្តសញ្ញាណដូចជាលិខិតឆ្លងដែន និងអត្តសញ្ញាណប័ណ្ណ ឬអ្នកបានស្នើសុំអោយប្រគល់អត្តសញ្ញាណប័ណ្ណ។ល។របស់អ្នកត្រឡប់វិញ ហើយត្រូវបានបដិសេធ។



មធ្យោបាយនៃការគ្រប់គ្រងអារម្មណ៍

5



- អ្នកអាចឈប់ពីការងារបានទេដោយសារការគំរាមកំហែងនៃការបង្កគ្រោះថ្នាក់ដល់ខ្លួនអ្នកផ្ទាល់ ឬក្រុមគ្រួសារ ឬអ្នកស្គាល់គ្នាជាមួយអ្នក។
- ពួកគេបានបំភ័យអ្នកថា អ្នកនឹងត្រូវបានបណ្តេញចេញពីប្រទេស ឬត្រូវបញ្ជូនទៅកាន់កន្លែងដែលមិនល្អជាងនេះ។
- ពួកគេបានបំភ័យអ្នកថា ប្រសិនបើអ្នករាយការណ៍ទៅកាន់ប៉ូស៊ីស អ្នកនឹងត្រូវទទួលទណ្ឌកម្មដោយការចោទប្រកាន់ថាអ្នកបានប្រព្រឹត្តិអំពើខុសច្បាប់ (ពេស្យាចារ ការស្នាក់នៅខុសច្បាប់ និងសកម្មភាពឧក្រិដ្ឋ។ល។) ។
- ពួកគេបាននិយាយអោយអ្នកមិនទុកចិត្តប៉ូស៊ីសដោយបាននិយាយថាទោះបីជាអ្នកប្តឹងប៉ូស៊ីសក៏គ្មានប្រយោជន៍ដែរ ដោយសារពួកគេស្គាល់មនុស្សដែលធ្វើការនៅភ្នាក់ងារស៊ើបអង្កេត ឬតុលាការ។
- ប្រសិនបើអ្នកចាកចេញពីកន្លែងការងារ (កន្លែងពេស្យាចារ កន្លែងកម្មកម្ម កន្លែងម៉ាស៊ីន និងភ្លើងកំសាន្ត។ល។) នោះគ្រួសារ និងអ្នកស្គាល់គ្នាជាមួយអ្នកនឹងត្រូវបានគំរាមកំហែងជាមួយនឹងការលាតត្រដាងការពិតថា ពួកគេបានប្រព្រឹត្តិអំពើពេស្យាចារ ឬបានថតរូបភាព និងវីដេអូដែលធ្វើអោយពួកគេមានអារម្មណ៍អាម៉ាស់ទាក់ទងនឹងផ្លូវភេទ។
- អ្នកមិនអាចធ្វើការប្រាស្រ័យទាក់ទងបានដោយសារតែអ្នកមិនស្គាល់អោយយន្ត និងទីតាំងស្នាក់នៅបច្ចុប្បន្ន ហើយនិងភ័យខ្លាចចំពោះជនដែលមានការពាក់ព័ន្ធនឹងការជួលអ្នកធ្វើការ។

គ. ប្រការដែលកំណត់អំពី 'គោលបំណង'នៃការកេងប្រវ័ញ្ច ដូចជាការជួញដូរមនុស្សមានដូចខាងក្រោម។

ប្រការ	ចំណុចសំខាន់
☐ អ្នកត្រូវបានកាត់ប្រាក់បៀវត្សរ៍ និងប្រាក់ចូលនិវត្តន៍តិចតួចជាងនឹងពលកម្ម ឬមិនអាចគ្រប់គ្រងប្រាក់ទាំងនោះដោយខ្លួនអ្នកផ្ទាល់បានដោយសារអ្នកមានទូនាទីក្នុងការសងបំណុលដែលទាក់ទងនឹងថ្លៃធ្វើដំណើរ និងថ្លៃចំណាយផ្សេងៗ (ការរៀបចំឯកសារ ការធ្វើទិដ្ឋាការ ការចំណាយថ្លៃធ្វើដំណើរ ការស្នាក់នៅ និងប្រាក់ធានាការធ្វើដំណើរ។ល។) នៅពេលជ្រើសរើសជាពលករ ឬនៅពេលធ្វើអត្តោប្រវេសន៍។	ទូទៅ
☐ អ្នកមិនអាចឈប់ធ្វើការតាមគោលបំណងអ្នកដោយសេរីបានទេ ឬត្រូវបានបង្ខំអោយធ្វើការផ្ទុយពីគោលបំណងរបស់អ្នក។	
☐ អ្នកត្រូវបានរងការបង្ខំឱ្យធ្វើពេស្យាចារ ឬរងការកេងប្រវ័ញ្ចផ្លូវភេទ	ពេស្យាចារ និងការកេងប្រវ័ញ្ចផ្លូវភេទ
☐ អ្នកមិនត្រូវបានបន្តផ្តល់អោយនូវលក្ខខណ្ឌការងារស្របច្បាប់ (ប្រាក់ឈ្នួលអប្បបរមា ប្រាក់ឧបត្ថម្ភ ម៉ោងធ្វើការ និងម៉ោងសម្រាក ការផ្តល់អាហារ និងកន្លែងស្នាក់នៅ។ល។) នោះទេ។	ការកេងប្រវ័ញ្ចកម្លាំង
☐ អ្នកត្រូវបានបង្ខំអោយធ្វើការដែលអ្នកមិនចង់ធ្វើដែលមិនស្ថិតនៅក្នុងលក្ខខណ្ឌនៃកិច្ចសន្យា និងបានរងអំពើហិង្សាលើរាងកាយ ឬអំពើហិង្សាដោយពាក្យសម្តែងដល់ ប្រសិនបើអ្នកមិនធ្វើការ។	ពលកម្ម
☐ ភាគីពាក់ព័ន្ធ បានអះអាងថាបានធ្វើការរក្សាការពារយកសេរីភាព ឬត្រូវបានសង្ស័យថាបានធ្វើការរក្សាបុរសវិវាទខុសច្បាប់ដោយសារមានស្នាមរបួស ឬស្លាកស្នាមនៃរាងកាយ។	ការកេងប្រវ័ញ្ច ដូចជាការរក្សាបុរសវិវាទ

네팔어

पीडित पहिचान सूचकको विस्तृत विवरणहरू

क. मानव बेचबिखन जस्ता 'कार्य' सँग सम्बन्धित वस्तुहरू निम्नानुसार छन्।

विषय वस्तु	तत्व
☐ आफ्नो वा परिवारको सम्पर्क सञ्जाल मार्फत, वा जागिरको विज्ञापन (प्रिन्ट मिडिया, रेडियो, टेलिभिजन, इन्टरनेट, सामाजिक सञ्जाल सेवा, आदि) मार्फत भर्तीकर्तासँग भेटेर शुल्क (दलाली शुल्क, एस्केप डिपोजिट, आदि) तिर्ने वाचा गर्यो ।	भर्ती
☐ आफ्नो बसोबासको ठाउँ छोडेर नयाँ ठेगानामा, अर्को देशमा सरेको भएमा, पूर्व सहमति बिना भर्ती गर्ने व्यक्ति वा सार्ने व्यक्तिसँग गन्तव्य सम्मा संगै गयो ।	ट्रान्जिट
☐ अन्तिम गन्तव्यमा पुग्नु अघि, एक निश्चित समय सम्म प्रवेश प्रतिबन्धित भएको ठाउँमा बस्नुपरेको थियो।	लुकाउनु
☐ भर्तीलाई एक व्यक्तिले अर्को तेस्रो पक्षलाई हस्तान्तरण गरिएको थियो।	हस्तान्तरण

ख. मानव बेचबिखन जस्ता 'माध्यम' सँग सम्बन्धित वस्तुहरू निम्नानुसार छन्।

विषय वस्तु	तत्व
☐ व्यक्ति वा परिवारलाई कुटपिट वा धम्कीको कारणले, व्यक्तिको इच्छा विरुद्ध सार्ने,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आवतजावतमा प्रतिबन्धित वा अलग गरिएको थियो।	शक्ति प्रयोग (कुटपिट, धम्की, जबरजस्ती, गिरफ्तारी/कारावास, लुटपात सहित)
☐ भर्तीको समयमा कस्तो प्रकारको काम गर्नु पर्ने हो भनेर जानकारी (सूचना) दिइएको (प्राप्त) भन्दा वास्तविक काम र कामको अवस्था फरक भएतापनि, रोजगारदाता दिएको काम गर्नु भन्दा अरु विकल्प थिएन ।	श्रेणी (धोखा र छलपटक जस्ता प्रलोभनहरू सहित)
☐ व्यक्ति वा परिवारले भर्तीकर्तालाई तिर्नुपर्ने ऋण, तलब खाता वा परिचय पत्र जस्ता कागजातहरू व्यक्तिको इच्छानुसार राख्न नदिने जस्ता नियन्त्रणका कारणले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जान वा छोड्न नसक्ने थियो।	त्यो भन्दा बाहेक अन्य माध्यम (शक्तिको दुरुपयोग, जोखिमको शोषण, सुशासन, आदि सहित)

माथिका ' माध्यम ' तत्वहरू मध्ये, 'त्यो भन्दा बाहेक अन्य माध्यम' को उदाहरणहरू निम्नानुसार छन्।



आर्थिक नियन्त्रणको माध्यम

- काम्पनिले अनुचित नियमको प्रयोग गरि कामदारको सहमति बिना ज्याला र थेचिकुमहरू अत्यधिक कटौती वा घटाउने गरियो ।
- रोजगार वा आप्रवासको प्रक्रिया (भर्ती, स्थानान्तरण, प्रवेश, आदि) को क्रममा उत्पन्न भएको वा उत्पन्न हुने लेनदेन वा डिपोजिट रकमको कारणले गर्दा निम्न मध्ये एक वा बढी समस्याहरू भोग्नु परेको छः
 - आफ्नै इच्छाले काम छोड्नु वा कार्यस्थ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गाह्रो भयो ।
 - लेनदेनको कारणले तलब वा थेचिकुम कटौती वा घटाइयो।
- ※ (लेनदेन भान्नेले) अवस्यक कागजातहरूको तयारी, भिसा जारी गर्ने, यात्रा खर्च, आवास खर्च, कार्य शुल्क, कार्यस्थलमको जरिवाना, चियापानीको खर्चको लागि भुक्तानी, आदि
- आफ्नो श्रमको बदलामा तलब वा थेचिकुम नपाउनु वा त्यसको व्यवस्थापन गर्न नपाउनु ।



भौतिक नियन्त्रणको माध्यम

- रोजगारदाता, एजेन्सी, कार्यस्थलका अधिकारी, इत्यादिबाट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वा शारीरिक हिंसा वा बारम्बार मौखिक दुर्व्यवहारको शिकार भएको छ ।
- सर्तमा नभएको वा सहमति नभएको काम गर्न बाध्य पारिएको वा कामको समय सकिएपछि पनि काम गर्न बाध्य पारिएको छ ।
- आफ्नो इच्छा बिना आफ्नो कार्यस्थलबाट अर्को व्यवसाय, कार्यक्षेत्र (वेश्यावृत्ति गर्ने स्थान, मनोरञ्जन गर्ने स्थान, मसाज पार्लर, क्लब, आदि) अरू स्थानमा सारेको वा अन्य भिन्न ठाउँमा काम गरेको छ ।
- रोजगारदाता वा अन्य व्यक्तिहरू छात्रावासमा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आउने जाने गरि निगरानी गरियो।
- खाना, पानी र दैनिक आवश्यकता पर्ने वस्तु र चिकित्सा सेवाहरूमा प्रतिबन्धित थियो ।
- कार्यस्थलमा बन्द गरिएका झ्याल, ढोका र इलेक्ट्रोनिक निगरानी जस्ता सुरक्षा उपकरणहरू जडान गरि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आवतजावतमा प्रतिबन्ध लगाएर कैद गरियो।
- बाहिर जानको लागि अनुमति आवश्यक थियो आफ्नो इच्छा विरुद्ध अरुसँग जानु पर्ने थियो। अनि बाहिरी कुरा (पत्र, टेलिफोन, मोबाइल फोन, आदि) को आदानप्रदानको लागि अनुमति आवश्यक थियो।
- राहदानी, आईडी कार्ड जस्ता परिचयपत्र आफुलाई नदिने वा आफ्नो परिचयपत्र फिर्ता दिन अनुरोध गरेतापनि अस्वीकार गरियो।



भावनात्मक नियन्त्रणको माध्यम

- आफू, आफ्नो परिवार वा चिनजानक व्यक्तिलाई हानि पुऱ्याउछु भनि धम्कीको कारणले आफ्नो जागिर छोड्न सक्नदैन ।
- देशबाट निकालिने वा खराब ठाउँमा पठाइने डर पैदा गराउँथ्यो ।

- यदि पुलिसमा रिपोर्ट गर्यो भने अवैध कार्य (वेश्यावृत्ति, अवैध बसोबास, आपराधिक गतिविधि, आदि) गरेको छ उक्तो रिपोर्ट गरिदिन्छु भन्ने डर पैदा गराउँछ्यो ।
- अनुसन्धान एजेन्सी वा अदालतमा चिनेको व्यक्ति भएकोले पुलिसमा रिपोर्ट गर्नु बेकार छ, आदिले प्रहरीप्रति अविश्वास बढाएको छ ।
- व्यवसाय (वेश्यावृत्ति गर्ने स्थान, मनोरञ्जन गर्ने स्थान, मसाज गर्ने स्थान, क्लब, आदि) छोडेमा, परिवार र परिचितहरू वेश्यावृत्तिमा संलग्न भएको जानकारी दिने धम्की दिने, यौन अपमानित महसुस गराउने फोटो र भिडियो खिचि लगाइयो।
- हालको ठेगाना वा स्थान पटककै थाहा नदिने, रोजगारदाताको डरले कुरा गर्न असमर्थ भएँ ।

ग. मानव बेचबिखन जस्ता शोषणको 'उद्देश्य' सँग सम्बन्धित वस्तुहरू निम्नानुसार छन्।

विषय वस्तु	तत्व
☐ रोजगार वा आप्रवासको प्रक्रिया (भर्ती, स्थानान्तरण, प्रवेश, आदि) को क्रममा उत्पन्न भएको वा उत्पन्न हुने लेनदेन (अवस्यक कागजातहरूको तयारी, भिसा जारी गर्ने, यात्रा खर्च, आवास खर्च, कार्य शुल्क, आदि) वा कम्पनि नछोड्ने डिपोजिट रकमको कारणले गर्दा आफ्नो तलब वा थेचिकुम कटौती हुदाँ वा त्यसको व्यवस्थापन गर्न नपाएको थियो ।	सामान्य
☐ आफ्नो स्वतन्त्र इच्छाको काम छोड्न पाएन, इच्छा विरुद्ध काम गर्न बाध्य थिए।	
☐ जबरजस्ती वेश्यावृत्ति वा यौन शोषण भयो ।	वेश्यावृत्ति र यौन शोषण
☐ कामका उचित अवस्था (न्यूनतम ज्याला, भत्ता, काम र आरामको समय, आवासको व्यवस्था, आदि) को निरन्तर ग्यारेन्टी थिएन।	
☐ श्रम सम्झौताको सर्तमा नभएको अनावश्यक काम गर्न बाध्य पारिएको थियो, काम नगरेमा शारीरिक हिंसा वा बारम्बार मौखिक दुर्व्यवहार गरिएको थियो।	श्रम शोषण
☐ सम्बन्धित व्यक्तिले शरीरको अंग काट्ने दाबी गरेको वा शरीरमा घाउ रहेकाले अवैध अंग प्रत्यारोपण भएको आशंका गरिएको छ ।	शरीरको अंग जस्तै अंग शोषण

러시아어

Подробный контрольный список показателе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жертв.

가. Ниже перечислены пункты, относящиеся к "Действиям", таким как торговля людьми.

Пункт	Фактор
☐ При помощи личных и семейных контактов или в ответ на объявление о работе (в печати, на радио, телевидении, в интернет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т. д.) вы встретились с рекрутером и согласились заплатить ему определенную сумму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за поиск, залог за выход и т. д.).	Приём
☐ Вы переехали с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на новый адрес,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ас завербовал, или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ас перевез, до места назначения без вашег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а
☐ Прежде чем добраться до конечного пункта назначения, им пришлось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ходиться в месте с ограниченным доступом.	Соккрытие
☐ Лицо было передано третьему лицу рекрутером или перевозчиком.	Передача Приём

나. Следующие пункты квалифицируются как "Средства" в торговле людьми.

Пункт	Фактор
☐ Лицо или его семья подверглись насилию и угрозам, из-за чего лицо было перемещено против своей воли или его свобода перемещения была ограничена или изолирована.	Принуждение (включая нападение, угрозы, давление, арест и заключение в тюрьму, а также вымогательство)
☐ Описа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работы, которое они получили при приеме на работу, отличалось от реальной работы и условий труда, но у них не было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подчиниться условиям труда, установленным работодателем.	Система подчинения (включая побеждения, мошенничество и обман)
☐ Лицо или его семья имели долг перед рекрутером, не могли владеть сво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банковской картой, удостоверением личности и т. д.), что ограничивало их свободу перемещения или ухода.	Другие эквивалентные средства (включая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властью, использование уязвимостей, контроль и т.д.)

Примеры "других эквивалентных средст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шеуказанной категорией "средства" включаю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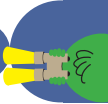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контроля

-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несправедливые правила чрезмерных вычетов или сокращени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ли пенсионных выплат без его/её (жертвы) согласия.
- Они пострадали от одного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из следующих фактор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долгов или кабалы, возникших в процесс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ли миграции (найма, миграции, после въезда и т. д.)
 - Трудно было уйти с работы или смени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желанию.
 - Для выплаты долга производились вычеты или уменьшение зарплаты или пенсионных выплат.
- * (Примеры долгов включают:) оформление документов, выдачу визы, проезд, проживание, брокерские сборы, штрафы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номинальные авансовые платежи на проживание и т. д.
- Лицо почти не получало зарплату или пенсионных выплат не могло управлять своей зарплат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Физ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контроля

- Подвергался сексуальному или физическому насилию или неоднократным словесным оскорбл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работодателя, агента, брокера, должностного лица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и т. д.
- Заставляли выполнять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не входила в условия контракта или на которую они не соглашались, или заставляли работать в нерабочее время.
- Переезжали с места на место, из заведения в заведение (например, бордели, публичные дома, массажные салоны, клубы и т. д.) или работали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против своей воли.
- За моим жильем велось наблюден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и другие люди приходили и уходили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 Ограниченный доступ к пище, воде, предметам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едицинским услугам.
- Был заперт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и его свобода передвижения была ограничена такими мерами, как зарешеченные окна, запертые двери и электронное наблюдение.
- Требовалос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ыход из дом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других людей, а такж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общение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переписка, телефонные звонки,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и т. д.).
- Лицо не могло владеть сво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паспортом, удостоверением личности и т. д.) или его просьбы вернуть документы отклонялись.



- Угрозы нанесения вреда лицу или его семье/друзьям не позволяли ему прекратить работу.
- Угрозы депортации или перемещения в худшие условия.
- Страх, что если вы позвоните в полицию, вас накажут, потому что вы совершили что-то незаконное (проституция, нелегальная иммиграция, преступ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и т. д.).
- Пропагандируют недоверие к полиции, например, говорят, что нет смысла обращаться в полицию,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есть свои люди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или судах.
- Угрожали разоблачить секс-бизнес перед семьей и друзьями, если они покинут заведение (бордели, публичные дома, массажные салоны, клубы и т. д.), или делали фото - и видеосъемку, заставлявшую их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сексуально униженными.
- Не имея ни малейш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том, где находится, включая адрес и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не могла общаться, опасаясь своего работодателя.

4. Пункты, относящиеся к «Целям»эксплуатации в торговле людьми следующие:

Пункт	Фактор
☐ У работника вычитали зарплату или пенсионные пособия и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споряжались ими под предлогом возмещения долгов, возникших в процесс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ли миграции (найма, миграции,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и т.д.), таких как оформление документов, выдача визы, дорожные расходы, проживание, брокерские сборы и т.д.	Общие
☐ Невозможность уйти с работы по собственной воле или принуждение к работе против воли.	
☐ Принуждали к проституции или подвергали сексуаль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Секс-рабство и сексуальн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труда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льготы, время работы и отдыха, жилье и т. д.) не обеспечивались.	
☐ Заставляли выполнять нежелательную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не входила в их договор, и подвергали физическому или неоднократному словесному насилию, если отказывались работать.	Трудов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 Сторона работодателя подозревается в извлечении органов или в незаконной трансплантации органов из-за следов или ран на теле.	Эксплуатация, включая извлечение органов

인도네시아어-인니어

Kategori pemeriksaan terperinci untuk indikator identifikasi korban

A. Hal-hal yang terkait dengan 'tindakan' seperti perdagangan manusia adalah sebagai berikut.

Kategori	Bagian
☐ Dijanjikan diberikan upah admin (biaya perantara, uang garansi apabila kabur dll) dari perekrut yang ditemui dari iklan pekerjaan (Media cetak, radio, televisi, Internet, layanan jejaring sosial, dll.) atau dari jaringan kontak pribadi dan keluarga	Perekrutan
☐ Meninggalkan tempat tinggalnya, lalu pindah ke alamat baru dan negara lain ditemani perekrut atau orang bagian pengiriman sampai ke tempat tujuan tanpa adanya persetujuan terlebih dahulu.	Pengiriman
☐ Sebelum mencapai tujuan akhir, diharuskan tinggal di tempat yang dibatasi masuk dan keluarnya dalam jangka waktu tertentu.	Penyembunyian
☐ Diserahterimakan kepada pihak ketiga oleh perekrut atau orang bagian pengiriman	Serah terima

B. Hal-hal yang terkait dengan 'cara' perdagangan manusia adalah sebagai berikut.

Kategori	Bagian
☐ Dikarenakan adanya penyerangan atau ancaman terhadap pribadi atau keluarganya, menyebabkan orang tersebut bergerak di luar keinginannya, atau kebebasan Bergeraknya dibatasi juga diasingkan.	Kekerasan (Termasuk penyerangan, pengancaman, pemaksaan, penangkapan/penahanan, penculikan)
☐ Meskipun pekerjaan dan kondisi kerja sebenarnya berbeda dengan apa yang diberitahu (diterima) dari penjelasan (pemberitahuan) tentang jenis pekerjaan yang akan dilakukan pada saat perekrutan, pekerja tidak punya pilihan selain mengikuti kondisi kerja yang disajikan oleh perusahaan atau pemberi kerja.	Kelicikan (Termasuk umpan kebohongan dan penipuan)
☐ Tidak dapat pergi atau tidak mampu bergerak bebas dikarenakan tidak diberikan kuasa untuk memiliki kartu identitas, rekening tabungan dan sejenisnya karena memiliki hutang keluarga atau hutang pribadi kepada perekrut	Cara lain yang setara (Termasuk penyalahgunaan kekuasaan, eksploitasi, dikuasai, dll.)



Pengendalian Ekonomi

- Tempat kerja telah memanfaatkan peraturan yang tidak adil untuk memotong atau mengurangi upah dan tunjangan pensiun secara berlebihan tanpa persetujuan karyawan.
- Telah mengalami satu atau beberapa hal berikut ini akibat hutang penjeratan akibat uang jaminan keberangkatan yang timbul selama proses kerja atau imigrasi (perekrutan, pemindahan setelah masuk ke negara tersebut dll)
 - Kesulitan untuk berhenti kerja atau pindah kerja atas kemauan sendiri.
 - Gaji atau tunjangan pensiun dipotong atau dikurangi untuk pembayaran utang.
 - * (Contoh utang) Penyusunan dokumen pendukung, penerbitan visa, biaya perjalanan, biaya akomodasi, biaya perantara, denda di tempat kerja, pembayaran di muka untuk biaya hidup, dll.
- Menerima sedikit atau tidak sama sekali uang gaji atau tunjangan pensiun sebagai upah kerja atau tidak diberikan hak untuk mengelola sendiri pendapatanya tersebut.



Pengendalian paksa secara fisik

- Menjadi sasaran kekerasan seksual juga fisik atau pelecehan verbal berulang kali oleh atasan, perwakilan agensi, perapppppppppntara, atau perwakilan tempat kerja.
- Dipaksa melakukan pekerjaan yang tidak sesuai dengan ketentuan kontrak atau yang tidak disepakati, atau dipaksa bekerja meskipun jam kerja telah usai.
- Pindah dari satu tempat kerja ke tempat lain, dari satu usaha ke usaha lain (tempat prostitusi, tempat hiburan, panti pijat, klub, dan sebagainya), atau bekerja di berbagai bidang, tanpa persetujuan pekerja.
- Tempat tinggal diawasi oleh pemberi kerja dan orang tak dikenal sesuka hati keluar masuk kediaman
- Mendapat batasan atas makanan, minuman dan barang kebutuhan sehari-hari juga layanan medis dibatasi
- Dikurung di tempat bekerja, dan kebebasan bergerak dibatasi oleh perangkat keamanan seperti jendela berjeruji, pintu terkunci, dan pengawasan elektronik.
- Izin diperlukan untuk keluar, dan harus ditemani oleh orang lain tanpa persetujuan pribadi. Selain itu, izin diperlukan untuk berkomunikasi dengan dunia luar (bertukar surat, telepon, telepon seluler, dll.).
- Tidak memiliki dokumen identitas seperti paspor atau KTP, atau ditolak ketika meminta kembali dokumen identitas d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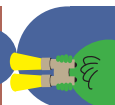


Pengendalian paksa secara mental

- Tidak dapat berhenti dari pekerjaan karena ancaman yang dapat merugikan diri sendiri, keluarga atau kerabat.
- Menakut-nakuti dengan mengatakan akan diusir dari negara ini atau dikirim ke tempat yang lebih buruk.
- Menakut-nakuti dengan mengatakan jika melapor ke polisi, akan dihukum karena telah melakukan tindakan ilegal (prostitusi, tinggal ilegal, aktivitas kriminal, dan lain-lain).
- Mengatakan bahwa melapor ke polisi tidak ada gunanya karena mengenal seseorang di lembaga investigasi atau pengadilan agar supaya korban tidak percaya terhadap polisi,
- Apabila meninggalkan suatu tempat (tempat prostitusi, tempat hiburan, panti pijat, klub, dll.), akan diancam dengan membeberkan tindakan prostitusi korban kepada keluarga dan kenalan korban, atau korban diminta untuk mengambil foto dan video yang membuat korban merasa terhina secara seksual.
- Sama sekali tidak mengetahui alamat atau lokasi korban saat ini, dan tidak dapat berkomunikasi karena takut pada pemberi kerja.

C. Hal-hal yang berkaitan dengan 'tujuan' eksploitasi, seperti perdagangan manusia, adalah sebagai berikut.

Kategori	Bagian
☐ Tidak diberikan hak untuk mengelola sendiri atau dikurangi Gaji dan tunjangan pensiun dengan dalih pembayaran utang (penyiapan dokumen pendukung, penerbitan visa, biaya kepindahan, biaya akomodasi, biaya perantara, dll) atau uang jaminan keberangkatan yang timbul selama proses kerja atau keimigrasian (rekrutmen, kepindahan, entri, dll.)	Umum
☐ Tidak diperbolehkan berhenti bekerja atas kemauan sendiri atau dipaksa bekerja di luar kemauan sendiri.	
☐ Dipaksa menjadi pelacur atau dieksploitasi secara seksual	Prostitusi dan eksploitasi seksual
☐ Tidak ada jaminan untuk kondisi kerja yang sah (upah minimum, tunjangan, jam kerja dan istirahat, tempat tinggal dan makan, dll.)	
☐ Dipaksa melakukan pekerjaan yang tidak diinginkan yang berbeda dengan isi kontrak, dan jika tidak melakukan pekerjaan tersebut, mereka akan dianiaya secara fisik atau verbal berulang kali.	Eksplorasi tenaga kerja
☐ Mencurigai adanya pengambilan organ atau transplantasi organ secara ilegal karena adanya bekas atau luka di tubuh.	Eksplorasi organ, termasuk pengambilan organ secara ilegal



몽골어

Хохирогчийг таних үзүүлэлтийн нарийвчилсан төрөл зүйл

А. Хүн худалдаалах гэмт хэргийн 'Үйлдэл'д хамаарах төрөл хэлбэр нь дараах агуулгатай байна.

Агуулга	Төрөл
☐ Өөрөөр болон гэр бүлээр дамжиж холбогдох, ажлын зар(сонин сэтгүүл, радио, телевиз, интернет, нийгмийн сүлжээний үйлчилгээ зэрэг)аар дамжуулан уулзаж зуучлагч нь (зуучлал, хөрөнгөөр барьцаалах зэрэг) санхүүгийн асуудалыг нь шийдэж өгөхөө амалсан.	Элсүүлэх
☐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газараа орхиж шинэ хаяг болон, өөр улсруу шилжиж, ямарч зөвшөөрөлгүйгээр элсүүлсэн хүн болон хөдөлгөөнд шилжүүлсэн хүнийг дагалдан очих газар хүртэл явсан.	Тээвэрлэх
☐ Эцсийн зорьсон газартаа хүрэхээс өмнө, орох гарахыг хязгааралсан орчинд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нд байрлах ёстой байсан.	Орогнуулах
☐ Элсүүлсэн хүн болон шилжүүлсэн хүнээр дамжуулагдан Здагч этгээдэд хүлээлгэн өгсөн.	Хүлээн авах

Б. Хүн худалдаалах гэмт хэргийн 'Арга зам'д хамаарах төрөл хэлбэр нь дараах агуулгатай байна

Агуулга	Төрөл
☐ Өөрт нь болон гэр бүлийнхэнд нь үүссэн хүчирхийлэл, заналхийлэлийн улмаас тухайн хүний хүсэлийнх нь эсрэг албадан шилжүүлэх болон чөлөөт хөдөлгөөнийг нь хязгаарлан тусгаарласан .	Хүч хэрэглэх (сүрдүүлэх, заналхийлэх, албадах, хулгайлах ·хорих, хар тамхинд донтуулах зэрэг хамрагдана)
☐ Ажилд авах үед ямар ажил хийх тухай тайлбар(мэдэгдэл) сонссоноос бодитоор ялгаатай байсан боловч, ажил олгогчийн зааварыг дагахаас өөр аргагүй болсон.	Шатлан захирах (хуурах· мэхлэх болон залилах ,урьхдах. зэрэг хамрагдана)
☐ Тухайн хүн болон гэр бүлийнхэн зуучлагчидад төлөх өр, цалингийн данс,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гэх мэт бичиг баримтаа өөрийн хүсэл зоригоос хамааран эзэмшиж чадаагүй зэрэг, мөн хяналтаас шалтгаалж чөлөөтэй хөдөлгөөн хийх боломжгүй болсон.	Бусад ижил төстэй арга хэрэгсэл (эрх мэдлээ урвуулан ашиглах,эмзэг байдлыг нь ашиглах.хяналтандаа байлгах зэрэг хамрагдана)

Дээрх 'Арга зам'ын төрөлд 'Бусад ижил төстэй арга гэдэгт' хамаарах төрөл хэлбэр нь дараах агуулгатай байна.



Санхүүгээр хянах арга

- Ажлын газрын шударга бус дүрмийг далимдуулан, ажилтаны зөвшөөрөлгүйгээр цалин-тэтгэврийн тэтгэмжийг хэт их суутган бууруулсан.
- Ажилд орох, цагаачлах үйл явцад (ажилд авах · шилжин явах · улсад нэвтрэх гэх мэт) үүссэн өр, байрны барьцааны улмаас дараахь зүйлсийн нэг буюу хэд хэдэн зүйлсийг амссан.
 - Өөрийн хүслээр ажлаасаа гарах, ажлын байраа солих хэцүү байсан.
 - Өр барагдуулсан учраас цалин · тэтгэвэрийн тэтгэмжийг хасах болон бууруулсан.
- * (Өрийн жишээ) Бичиг баримт бүрдүүлэх, виз олгох, хөдөлгөөний зардал, байрны зардал, зуучлалын хөлс, ажлын байрны торгууль, амьжиргааны зардал гэх мэт
- Хөдөлмөрлөснийхөө хариуд цалин · тэтгэвэрийн тэтгэмжийг бараг авж чадагүй байх болон өөрөө хянаж зохицуулж чадаагү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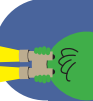
Биеийн хүчээр хянах арга

- Ажил олгогчид, агентлагийн ажилтанууд, зуучлагчид, ажлын байрны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уудаас бие мах бодийн болон байнгийн хэл ярианы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өж байсан.
- Гэрээний нөхцөлд заагдаагүй зөвшөөрөөгүй ажлыг албадан хийлгэх болон ажлын цаг дууссан хойно ч ажиллахыг албадсаар байсан.
- Тухайн хүний өөрийн хүслээс үл хамааран 1ажлын байрнаас нөгөө ажлын байр, наймаалах газар(биеэ үнэлэх газар, зугаа цэнгээний газар, массажны газар, клуб зэрэг)аар дамжигдан олон газар ажиллсан болно.
- Байранд ажил олгогч болон бусад хүмүүс орж гаран хяналтанд байлгасан.
- Хоол хүнс, ус, өдөр тутмын хэрэгцээт зүйл болон эмнэлэгийн үйлчилгээг хязгаарласан.
- Ажлын байранд дахь цоожтой хаалга, цонх, цахим хамгаалалт болон хамгаалалтын төхөөрөмжүүдийн улмаас хөдөлгөөний эрх чөлөө хязгаарлагдсан.
- Гадагшаа гарахын тулд зөвшөөрөл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сан бөгөөд өөрийн хүслээс үл хамааран өөр хүн дагалдан явах ёстой, мөн гадаад ертөнцтэй харилцах(захидал солилцох, утас, холбоо зэрэг)даа зөвшөөрөл авах хэрэгтэй байсан.
- Гадаад паспорт,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зэрэг бичиг баримтаа биедээ авж явах боломжгүй, авахыг хүссэн боловч татгалзсан хариу авсан.



Сэтгэл санаагаар хяна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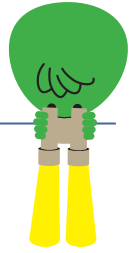
- Өөрт болон гэр бүл, танил хүмүүсд хор хөнөөл учруулана гэсэн заналхийллийн улмаас ажилаасаа гарж чадаагүй.
- Улсаас хөөх эсвэл бүр муухай газарлуу явуулна гэсэн айдас төрүүлсэн.
- Цагдаагийн газар мэдэгдвэл хууль бус үйлдэл(биеэ үнэлэлт,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х, гэмт хэрэг үйлдсэн гэх мэт) хийсэн учираас эсрэгээрээ өөрөө шийтгүүлнэ гэсэн айдас төрүүлсэн.
- Мөрдөн байцаах газар, шүүхэд таньдаг хүн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цагдаад мэдэгдээд нэмэргүй зэргээр цагдаа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үл итгэх байдлыг төрүүлсэн.
- Байгууллага(биеэ үнэлэх газар, зугаа цэнгээний газар, массажны газар, клуб гэх мэт)аас орговол гэр бүлийнхэн болон танилуудад биеэ үнэлж байсныг илчилнэ гэж дарамтлан, бэлгийн ичгүүртэй байдалд орсон гэрэл зураг, бичлэг зэргийг хийлгэсэн.
- Өөрийнхөө одоогийн байгаа хаяг байршилыг яагаад ч мэдэх боломжгүй байсан бөгөөд, хөдөлмөр эрхлүүлэгч этгээдээс айх айдасын улмаас харилцах боломжгүй байсан.

В. Хүн худалдаалах гэмт хэргийн мөлжих 'Зорилго'д хамаарах төрөл хэлбэр нь дараах агуулгатай байна.

Агуулга	Төрөл
☐ Ажилд орох, цагаачлах (ажилд авах · шилжүүлэх· хилээр нэвтрүүлэх) явцад үүссэн болон үүссэн өр төлбөрийг (бичиг баримт бүрдүүлэх, виз олгох, хөдөлгөөний зардал, байрны зардал, зуучлалын хөлс гэх мэт) буцах барьцаа нэрийдэлээр цалин, тэтгэвэрийн тэтгэмжээс хасах буюу өөрөө хянаж зохицуулж чадаагүй.	Нийтлэг тал
☐ Чөлөөтэйгөөр ажилаасаа гарах боломжгүй, өөрийн хүсэл зорилгоос үл хамааран ажиллахаас аргагүйд хүрсэн.	
☐ Хүчээр биеэ үнэлэх болон бэлгийн мөлжлөгт өртсөн.	Биеийг нь үнэлүүлэх болон бэлгийн мөлжлөг
☐ Хууль ёсны гэрээний нөхцөл(хөдөлмөрийн хөлсний доод хэмжээ, тэтгэмж, амралтын цаг, амрах өрөө, хоол гэх мэт) нь байнгын баталгаатай байгаагүй.	Албадан хөдөлмөрлүүлэх
☐ Гэрээнд заагдаагүй ажлыг хүсээгүй үед албдан хийлгэж, ажлаа хийгээгүй тохиолдолд бие мах бодын болон хэл амаар доромжилж байсан.	
☐ Тухайн хүний эд эрхтэнийг шилжүүлэх болон биед нь мэсийн шарх сорви байвал хууль бус эрхтний донор болсон гэж сэжиглэнэ.	Эд эрхтнийг авах

05

2. 인신매매등 식별의 Quick Guide



인신매매등 식별의 Quick Guide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하기 전 또는 긴급하게 식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국제이주기구(IOM)의 Victim of Trafficking-Screening Interview Form, Polaris Project의 The Action Means Purpose “A-M-P” Model을 국내 상황에 맞도록 번안 및 재구성하였으며, 인신매매방지법²⁾에 근거해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²⁾.

사전단계

필수 준비사항	✓
▪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자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까?	
▪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조성했습니까?	
▪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준비(통역, 충분한 휴식, 심리적 안정 등)가 되었습니까?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됨을 고지했습니까?	
▪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의 보호 및 지원의 대상자가 됨을 고지했습니까?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기본정보 기록

이름		가족관계	
성 별		국 가	
생년월일		장애여부	
피해유형	① 성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체류자격 유형 (외국인에 한함)	

2) 「인신매매등피해자식별지표」 현장담당자 교육자료(해설서)(여성가족부, 2023)



식별지표 활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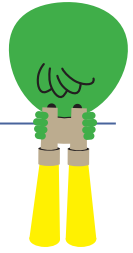
행위	✓
피해자는 중개료, 이탈 보증금, 관리업체 사후관리비, 선금금 등을 지불하였거나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거나 타인에 의해 다른 곳으로 운송 된 적이 있습니까?	
피해자는 제한된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그 장소에 (반)구금 상태입니까?	
피해자는 모집 당시나 이동 시 최초로 만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인수·인계된 적이 있습니까?	

수단	✓
피해자는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 등과 같은 위력을 행사 받았습니까?	
피해자는 사기, 기만, 유인 등을 이용한 위계를 행사 받았습니까?	
피해자는 피해자의 취약성 및 궁박한 상태(장애, 불법체류, 서투른 언어, 가출, 경제적 빈곤 등)를 이용하여 통제 당하였습니까?	
피해자는 누군가의 지배관리 하(출입이 자유롭지 못함, 잠금장치 설치 등)에 생활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는 공포감(쫓겨날 것이라는 혹은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 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목적	✓
피해자는 성적 착취 피해를 입었습니까?	
피해자는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었습니까?	
피해자는 장기적출 피해를 입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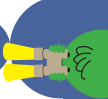
판단 주의사항	✓
각 분류에 1개 이상 체크 여부(행위, 수단, 목적이 모두 해당되어야 인신매매등피해자에 해당)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각 분류 중 행위와 목적의 1개 이상 항목에 충족되나요?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행위와 목적에서 1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면 피해자에 해당)	

05 3. 피해자 지원 기관 목록



☑ 지원 대표 기관

피해구분	지원기관	지원내용	운영(상담)시간
긴급 대응	112	인신매매등 긴급 범죄신고, 출동요청 등	365일 24시간
	119	신체상해 등으로 긴급하게 구조·이송이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리)신고접수, 긴급상담, 관련 기관 연계, 긴급구조 등	365일 24시간
노동착취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 고용상담, 노동상담, 외국어상담(영어, 중국어) 등 (지원언어) 3개 국가(한국, 영어, 중국)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상담전화 1331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인권 상담 제공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통역 지원	다누리콜 1577-1366	- 전문 법률자문, 3자 통화 통역 및 번역서비스 등 (지원언어) 13개 국가 * 한국, 영어, 중국, 베트남, 타갈로그어,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일본, 태국,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네팔	365일 24시간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	-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지원언어) 20개 국가 * 한국, 영어,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몽골, 인니,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독일, 스페인, 필리핀, 아랍, 스리랑카	평일 09:00 ~ 22:00 (18:00 이후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가능)
	외국인력 상담센터 1577-0071	- 고용·체류지원 업무 상담 등 (지원언어) 20개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영어,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365일 2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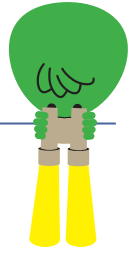


피해구분	지원기관	지원내용	운영(상담)시간
그 외	장애인 학대 피해 1644-8295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의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노인 학대 피해 1577-1389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등	365일 24시간
	학교폭력	• (117)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전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1588-9128) 학교폭력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개인 및 집단 상담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성희롱	(02-735-7544)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범죄피해	(1577-2584)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민원 등 기타 문의	• (110) 행정기관의 위법,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에 대한 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 (1600-2100) 여성가족부 민원상담 • (129) 보건복지부 복지콜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위탁운영)

구분	지자체	명 칭	대표 연락처
1	부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1-868-7606
2	대구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3-654-9700
3	인천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32-231-4545
4	광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1644-3828
5	충남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41-622-7955
6	전북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551-1195
7	경남(창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899-5002
8	경남(김해)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724-2725
9	경남(양산)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07-1305-0255

05 4. 사증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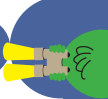
* 사증 관련 세부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증 구분 및 내용 (24.10.14 기준)

1. 외교(A-1)	2. 공무(A-2)	3. 협정(A-3)	4. 사증면제(B-1)	5. 관광통과(B-2)
6. 일시취재(C-1)	7. 단기방문(C-3)	8. 단기취업(C-4)	9. 문화예술(D-1)	10. 유학(D-2)
11. 기술연수(D-3)	12. 일반연수(D-4)	13. 취재(D-5)	14. 종교(D-6)	15. 주재(D-7)
16. 기업투자(D-8)	17. 무역경영(D-9)	18. 구직(D-10)	19. 교수(E-1)	20. 회화지도(E-2)
21. 연구(E-3)	22. 기술지도(E-4)	23. 전문직업(E-5)	24. 예술흥행(E-6)	25. 특정활동(E-7)
26. 계절근로(E-8)	27. 비전문취업(E-9)	28. 선원취업(E-10)	29. 방문동거(F-1)	30. 거주(F-2)
31. 동반(F-3)	32. 재외동포(F-4)	33. 영주(F-5)	34. 결혼이민(F-6)	35. 기타(G-1)
36. 관광취업(H-1)	37. 방문취업(H-2)			

☑ 주요 사증별 거주기간 및 제한 (24.10.14 기준)

구분	활동범위 및 해당자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
B-1 사증 면제	협정상의 체류활동을 위해 입국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협정상의 체류기간
B-2 관광 통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C-3 단기방문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의 참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등을 목적으로 90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90일 *체류 연장 필요시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내에 연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등을 하는 사람, 이외에도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2년 *체류 연장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체류 기간연장 허가 (세부별로 상이)



구분	활동범위 및 해당자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
E-7 특정활동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허용직종 총 90개)	3년
E-8 계절근로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개월 (총 체류기간은 8개월 초과할 수 없음) *체류 연장 필요시 관할지방 자치단체로 신청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을 하려는 사람	3년(최장 4년 10개월)
E-10 선원취업	내항선원, 20톤 이상의 어선원,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하려는 사람	3년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용)
F-4 재외동포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자, 요양보호 자격 취득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F-6 결혼이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국내체류 하려는 자	3년 (세부별로 상이)
G-1 기타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난민신청자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1년 (세부별로 상이)
H-1 관광취업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상 체류기간 *체류자격 연장 필요시 입국한 날로 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H-2 방문취업제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H-2) 발급	3년

참고자료

-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2010),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상담 매뉴얼」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과(2020),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북」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20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2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참고사이트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EPS외국인고용지원
- 고용노동부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현장활용 가이드북

등록번호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획·구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화 02-735-1050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주소 (045050)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상담전화 1600-8248

전자우편 8248@stop.or.kr

디자인·인쇄 도노디자인 02-2272-5009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허락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현장활용 가이드북